

수원시 기금 사업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양성평등기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aluation Model of Fund Business in Suwon
: Focusing on Gender Equality Fund

이영안

국문 요약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현승 (수원시정연구원 과제연구원)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의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평가모형의 지표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수원시가 성불평등구조에 따른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향후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결과평가 모형을 체계화하기 위해 6개 평가영역과 20개 평가지표(기존 4개 영역, 11개 평가지표)로 세분화하여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존 사업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표의 내용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사례와 기준을 통해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가지표를 선정하였고, 이러한 평가지표의 우선순위(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AHP) 기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추구하는 실질적 목표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체화 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기존의 성과평가 지표들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산술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선 모형에서는 ‘목표의 효과성’, ‘성과의 우수성’, ‘보고의 형식성’ 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11개 세부 지표로 구성함으로써 기금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예산과 회계의 투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였다. 현행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평가지표는 예산 집행 결과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 하여 예산 및 회계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예산계획 대비 집행결과와 중도에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회계관리에 있어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의 준수여부,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의 제도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양성평등기금사업 평가모형의 개발과 활용은 제도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평가영역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타당성 갖추어 표준화된 지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표준화된 평가모형은 향후 양성평등기금 사업운영의 도입을 계획

© 2017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7년 10월 25일
 발행 2017년 10월 31일
 디자인 아이콘커뮤니케이션 Tel. 031-245-5500
 I S B N 979-11-87778-81-3 (933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2017. 「수원시 기금 사업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양성평등기금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현재 동일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거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운용 평가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 내 현실에 맞는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의 확산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양성평등기금, 기금평가, 평가모형 개발, 평가지표 개발,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AHP)

| 차례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제2장 이론적 검토	5
제1절 양성평등기금의 의의	5
1. 기금의 개념 및 특성	5
2. 기금의 유형	9
3. 양성평등기금의 의의	12
제2절 기금 사업운영 평가	17
1. 기금평가의 개념	17
2. 기금평가의 유형	18
3. 사업운영 평가	22
제3절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기금 사업운영 평가 사례	25
1. 경기도	25
2. 부산광역시	29
3. 제주특별자치도	34
제3장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사업 운영현황 분석	41
제1절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현황	41
1.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배경 및 법적근거	41
2.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조성내역	43
3.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44
제2절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운영 현황	46
1. 사업 추진과정	46

2. 신청자격 기준	47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주요내용	97
3. 사업 참여단체 현황	48	제2절 평가지표 개발의 활용	98
4. 지원 대상 사업	50	제3절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99
5. 사업별 사업비 현황	54	참고문헌	101
제3절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현황	64	부록	105
1. 평가의 의의 및 평가주체	64		
2. 평가내용	64		
3. 평가방법	70		
4. 평가결과의 활용	71		
제4절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의 문제점	73		
1. 평가주체의 전문성 확보 문제	74		
2. 평가내용의 타당성 문제	74		
3. 평가방법의 적절성 문제	75		
4. 평가결과 활용상의 문제	76		
제4장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사업 평가모형 개발	77		
제1절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절차 및 기본틀	77		
1. AHP의 개념	77		
2. AHP의 절차	78		
제2절 평가모형 설계	80		
1. 평가모형의 타당성 검토	80		
2.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	81		
3. 설문조사 및 데이터 수집	84		
4.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조사	85		
제3절 분석결과	87		
1. 양성평등기금 평가영역 중요도 분석결과	88		
2. 양성평등기금 세부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결과	89		
3. 복합가중치 분석을 통한 종합적 우선순위 분석결과	94		
4. 최종 평가지표 개발 및 제안	96		
제5장 결론	97		

| 표 차례 |

<표 2-1> 학자별 기금의 개념 정의	6
<표 2-2>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예산의 비교	8
<표 2-3> 설치목적에 따른 기금의 종류	10
<표 2-4> 영역별 양성평등의 의미	14
<표 2-5>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의 비교	15
<표 2-6> 양성평등 실현 사업 세부 내용	16
<표 2-7> 기획재정부 기금준치평가 평가지표	19
<표 2-8>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 평가지표	21
<표 2-9> 2015년 이전 사업운영 평가영역 및 지표	23
<표 2-10> 2015년 이후 사업운영 평가영역 및 지표	23
<표 2-11>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현황	26
<표 2-12> 경기도 성평등기금 사업 선정 평가표	27
<표 2-13> 경기도 성평등기금 사업운영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28
<표 2-14>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기금 통합 운용사항	29
<표 2-15>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현황	30
<표 2-16>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 평가표	31
<표 2-17>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중간평가 기준 및 항목	32
<표 2-18> 부산광역시 사업평가표	33
<표 2-19>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현황	35
<표 2-20>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선정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37
<표 2-2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현장 모니터링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39
<표 3-1>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	42
<표 3-2> 연도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43
<표 3-3> 연도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조성 현황	44
<표 3-4> 연도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집행 현황	45
<표 3-5> 연도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현황	46
<표 3-6>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사업 추진 과정	47
<표 3-7>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사업 참여단체 현황	49
<표 3-8> 연도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참여단체 유형	50
<표 3-9> 양성평등기금 사업내용	52
<표 3-10>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수	52
<표 3-11> 2013-2015년 목적별 지원 사업 현황	53
<표 3-12> 2016년 목적별 지원 사업 현황	54
<표 3-13> 201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현황	54
<표 3-14> 2013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지원 현황	55
<표 3-15> 2014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지원 현황	56
<표 3-16> 2014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지원 현황	57
<표 3-17> 2015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지원 현황	58
<표 3-18> 2015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지원 현황	59
<표 3-19> 2016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지원 현황	60
<표 3-20> 2016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지원 현황	61
<표 3-21>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현황	62
<표 3-22> 2017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지원 현황	62
<표 3-23> 2014-2015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 심사기준	65
<표 3-24>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 심사기준	67
<표 3-25>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정량적 평가지표	69
<표 3-26>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정성적 평가지표	70
<표 3-27>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등급	71
<표 3-28>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결과의 활용	72
<표 3-29>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등급 현황	73
<표 4-1> 양성평등기금 평가지표	84
<표 4-2>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85
<표 4-3> 측정문항의 기술통계: 평가영역	86
<표 4-4> 측정문항의 기술통계: 평가지표	87
<표 4-5> 관리단계의 평가영역에 대한 중요도 분석	88
<표 4-6> 결과단계의 평가영역에 대한 중요도 분석	89
<표 4-7> 역량전문성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90
<표 4-8> 예산·회계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90
<표 4-9> 문제 대응성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91
<표 4-10> 목표 효과성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92

<표 4-11>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93
 <표 4-12> 보고 형식성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93
 <표 4-13> 복합가중치 분석을 통한 종합적 우선순위: 관리단계 94
 <표 4-14> 복합가중치 분석을 통한 종합적 우선순위: 결과단계 95
 <표 4-15>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최종 평가지표 및 가중치 96

| 그림 차례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4-1> AHP의 표준 계층 구성 79
 <그림 4-2> AHP 평가기준의 도출과정 81
 <그림 4-3> 현행 평가모형 분석을 통한 개선모형 및 지표 도출 82
 <그림 4-4>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평가모형 설계 8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자금이며,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성향숙, 2016, p. 355; 이삼주, 2009, p. 87).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비전형적 지출(non-conventional expenditures)의 주요한 재원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다(Shick, 1986; 여영현, 200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다(행정자치부, 2003; 박충훈, 2007, p. 34).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및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명확한 기금운영기준의 부재와 이로 인한 기금사업 내용의 부적절성 등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감사원, 2003; 박충훈, 2007; 여영현, 2007; 이삼주, 2009; 이용환, 2004).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난 200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평가체계 확립을 위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도 예외는 아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 재원으로 조성·운용되는 기금이다. 여기에서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성이 강조

됨에 따라 수원시도 1998년부터 2009년까지 50억 원의 양성평등기금¹⁾을 조성하였으며, 양성평등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위해 기금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선정 후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는 사업선정의 적절성과 합목적성은 물론 사업운영 과정상의 문제점 및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이라는 기금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체계와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방법에 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기금 사업 효율화를 위한 평가모형 개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한다.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모형 개발은 기금 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을 포함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정보 제공은 물론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이라는 양성평등기금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로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기금평가는 사업운용평가와 자산운용평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사업운용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금 사업운용 현황, 참여단체 및 지원 사업 현황 등에 관한 분석도 포함하여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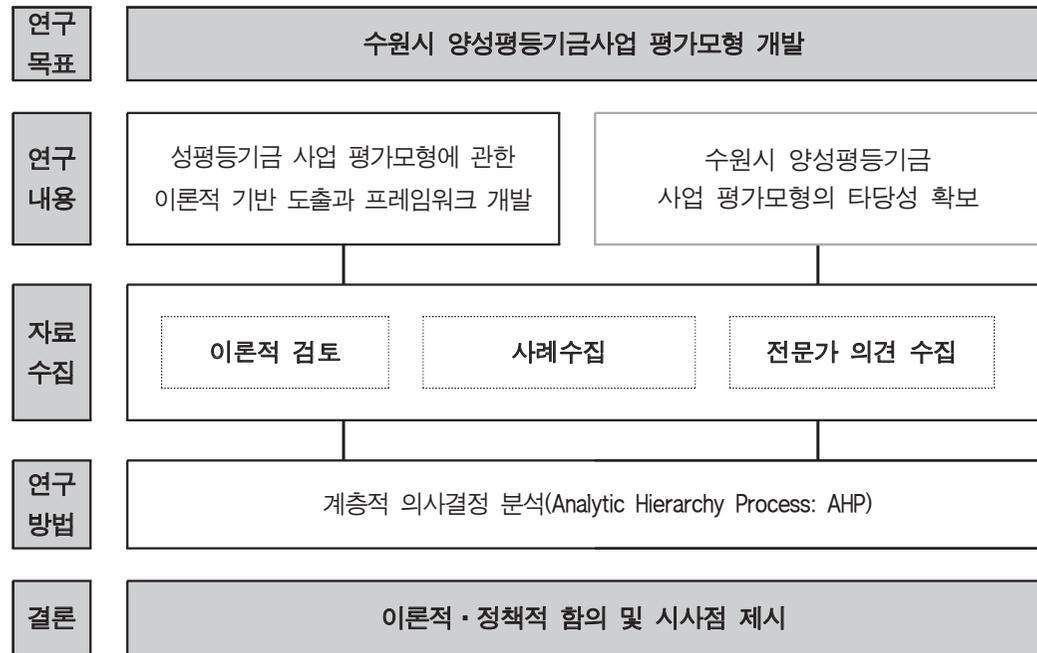
둘째, 시간적 범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으로 설정한다. 수원시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해는 1998년부터이지만 이를 연구범위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2014년도를 전후해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운용 규모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원은 2013년까지 이자수익 금액 내에서 사업지원이 이루어졌지만 2014년부터는 이자수익보다 사업비 금액이 초과하게 되어 사업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활용한다. 문헌연구는 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관한 문헌분석과 기금 평가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한다. 문헌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모형에 관한 이론적 기반 도출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금 평가 및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에 관한 국내외 보고서 및 학술논문,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사업 현황 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실시한다.

둘째,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모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한다. AHP분석의 목적은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평가영역별 가중치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평가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평가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1)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2015년까지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양성평등기금의 의의

1. 기금의 개념 및 특성

1) 기금의 개념

기금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학자별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표 2-1 참조).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기금의 개념에 관한 정의는 법률적 관점과 정책수단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윤수재 외, 2010). 여기에서는 이상의 관점에 따른 기금의 개념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기금의 개념을 정립한다.

첫째, 법률적 관점에서 기금에 관한 정의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을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로 설치”한 재정으로 기술하고 있다(동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둘째, 정책수단적 관점에 따른 기금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Salamon(2002)은 기금을 정부의 다양한 재정적 정책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식의 하나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강영철 외(2008)는 금전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공재의 생산과정에 상당히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정부주도적 정책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윤수재 외, 2010에서 재인용). 홍미영 외(2016)은 기금을 “특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재정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나중식(2008) 역시 특수한 정책목적 실현을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윤수재 외(2010)는 기금을 “예산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정부의 특수 목적 실현을 위해 적립된 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예산의 형태이자 재정적 도구”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기금이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또는 정책도구로서의 가치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평가할 수 있다.

기금의 개념 정의에 관한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 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탄

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1> 학자별 기금의 개념 정의

구분	기금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
Salamon (2002)	정부의 다양한 재정적 정책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식
강영철 외 (2008)	금전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공재의 생산과정에 상당히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정부주도적 정책수단
나중식 (2008)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 자금
윤수재 외 (2010)	예산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정부의 특수 목적 실현을 위해 적립된 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예산의 형태이자 재정적 도구
성향숙 (2014)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회계 외 별도의 재원
홍미영 외 (2016)	특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재정제도

2) 기금의 특성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특성은 무엇인가? 기금의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는 비교론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재정제도인 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된다. 예산과 기금의 주요 내용 및 차이는 다음과 같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박재규 외, 2009).

첫째, 예산과 기금은 설치목적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운영, 특정 자금 운용,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충당을 위해 설치된다. 이에 비해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된다.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유사성은 가지고 있지만 일반회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측면에서의 특징이다. 일반회계는 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무상급부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기금은 출연금과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조

성되며 이를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개별법령에 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연계되어 있거나 중앙정부의 재정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셋째, 기금은 확정절차에 있어 자율성이 높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정부 예산안의 편성권은 기획재정부로 일원화되어 있다. 예산은 부처의 예산요구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이에 비해 기금은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조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역시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조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게 함으로써 예산보다 형식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넷째, 기금은 집행절차에 있어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경우 합법성에 근거하여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에 비해 기금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 예를 들어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은 지출과목이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뉘어 상당한 통제가 가해지는데 반해 기금은 신축적인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으면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고 있다.

다섯째,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 일반회계의 경우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배제되어 있지만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일반회계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설치·운영되어 회계연도 내에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도록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금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이월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립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박재규 외, 2009).

여섯째,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기금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경우 단체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분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박재규 외, 2009). 앞서서도 기술한 바와 기금은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전형적 지출

(non-conventional expenditures)의 주요 재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Shick, 1986; 성향숙, 2016; 여영현, 2007; 이삼주, 2009). 기금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회계체도가 갖는 통제성과 경직성을 극복함으로써 특수한 정책목적에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시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운용상의 투명성 및 사업수행의 효과성 저하,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삼주, 2009; 허명순 2012).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기금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표 2-2>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예산의 비교

구분	기금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목적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 사업 운영, 특정 자금 운용,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충당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사업 등 수행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확정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운용계획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조정 ③ 지방의회 심의·의결로 확정	① 지자체 예하 부서의 예산요구 ② 지자체가 예산안 편성 ③ 지방의회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 합법성에 근거하여 엄격한 통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적용	
수입·지출의 연계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변경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 시에만 지방의회 심의·의결 필요	지방의회 심의·의결 거쳐 추경예산 편성	
결산	지방의회 심사 및 의결국회의 결산심사 확정	좌동	좌동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 「대한민국재정 2017」;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2009, 「기금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

2. 기금의 유형

기금은 수행하는 기능 및 종류가 다양하므로 설치 및 운용목적, 기금의 규모, 관리·운용 주체, 기금의 고유성격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김현수 외, 2015; 윤영진, 2014).

1) 설치 및 운용목적에 따른 분류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에 따라 사업성, 금융성, 사회보험성, 계정성 기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첫째, 사업성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사업성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남북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산업, 과학기술, 교육, 환경, 문화관광, 국방, 여성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2017년 현재 48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다.

둘째, 금융성 기금은 독자적이고 직접적인 재정·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금이 아니라 특정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을 의미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금융성 기금은 보조적인 역할이 강조되므로 국가의 보증의무 이행 등 향후 위험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김현수·여환영·곽윤희, 2015). 금융성 기금으로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8개가 해당된다(기획재정부, 2017a).

셋째, 사회보험성 기금은 사회보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성 기금과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여유자금 및 연금급여를 운용하는 연금성 기금으로 구분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윤영진, 2014). 사회보험성 기금에는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6개 기금이 해당된다(기획재정부, 2017a).

넷째, 계정성 기금은 특정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사업집행주체와 기금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한 기금이다. 계정성 기금은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자금을 모아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계정성 기금에는 공적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5개가 해당된다(기획재정부 2017a).

<표 2-3> 설치목적에 따른 기금의 종류

기금명	수	특징	기금종류
사업성 기금	48	예산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	산업, 과학기술, 교육, 환경, 문화관광, 국방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남북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48개 기금 설치·운영
금융성 기금	8	독자적이고 직접적인 재정·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금이 아니라, 특정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신용보증기금과 3개 신용보증 관련 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8개 기금 설치·운영
사회보험성 (연금성)기금	6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성 기금과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여유자금 및 연금급여를 운용하는 연금성 기금으로 구성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6개 기금이 설치·운영
계정성 기금	5	사업집행주체와 기금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한 기금으로서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자금을 모아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등 5개 기금이 설치·운영
합계	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 「대한민국재정 2017」.

2) 기금의 규모에 따른 분류

기금의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모에 따른 기금 분류는 기금운용평가시 운용자산 규모별 평가를 위한 분류기준으로 활용되며, 규모별 기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현수 외, 2015).

첫째, 대형 기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원 이상인 기금이다.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중형 기금은 여유자금이 1천억 이상 1조원 미만인 기금이다. 예를 들어 군인복지기금, 보훈기금, 군인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소형 기금은 여유자금이 1천억 미만인 규모의 기금을 말한다. 소형 기금에는 사학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이 포함된다.

3)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에 따른 분류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에 따라 정부의 직접 관리 형태, 정부의 위탁관리 형태, 정부산하기관의 관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윤영진, 2014).

첫째, 정부의 직접 관리 형태는 기금의 소관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의 기금을 말한다. 정부의 직접 관리 형태 기금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군인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양성평등기금, 고용보험기금, 방송발전기금, 복권기금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위탁관리 형태는 정부가 한국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기관에 위탁해 관리하는 형태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관리공단), 공적자금상환기금(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한국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수출입은행), 쌀소득보전기금(농협중앙회), 전력산업기반기금(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함된다.

셋째, 정부산하기관의 관리 형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문화예술진흥원 등의 정부산하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다. 정부산하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형태의 기금으로는 사학연금기금(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원), 근로복지진흥기금(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들 수 있다.

4) 기금의 고유 성격에 따른 분류

기금의 고유 성격에 따라 교육문화, 복지노동, 산업과학, 연금금융으로 구분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5; 김현수 외, 2015). 이러한 분류는 사업운영 평가시 평가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할 때 활용되며, 부처별로 자체 평가한 후 기획재정부가 확인 및 점검하기 때문에 부처 성격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 교육문화 기금은 교육, 관광,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된 기금이다. 여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교류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복권기금, 사학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

년육성기금 등이 포함된다.

둘째, 복지노동 기금은 보건, 의료, 복지, 보훈, 고용, 노동 등과 관련된 기금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군인복지기금, 보훈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응급의료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이 해당된다.

셋째, 산업과학 기금은 주택, 산업, 농·어업, 원자력, 정보통신 등과 관련된 기금이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이 포함된다.

넷째, 연금금융 기금은 각종 연금 및 신용보증 등과 관련된 기금이다. 여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 양성평등기금의 의의

1) 양성평등의 개념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논의에 앞서 양성평등에 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의 법률적 개념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이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양성평등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경제, 정치, 교육, 가정 등 모든 사회 영역별로 성불평등 문제의 성격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등 영역별로 구체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여성가족부, 2015).

첫째, 정치영역에서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와 성별 대표성이 확보된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정치 분야에서 비례대표 후보 여성 할당 30% 의무화 등 법·제도적 진전으로 인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

외에도 공직·교직 등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목표제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 비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관리자 비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5). 이러한 실태를 토대로 할 때 정치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은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의 균형 있는 참여가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둘째, 경제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은 경제활동참가율, 임금, 관리자 및 임원 비율 등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직업과 직종에서 성별 분리가 실질적으로 개선·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2015)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성 대비 여성 임금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OECD, 2014). 경제영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성별 직업분리 개선,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여성의 창업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 등의 정책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교육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공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영역에서의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 강화, 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양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대학생 및 대학 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등의 정책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가정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성별 역할과 책임 분리가 해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가정에서 남녀가 동등한 가사·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국가기관 등은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5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남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여성의 경제참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표 2-4> 영역별 양성평등의 의미

영역	내 용
정치	-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와 성별 대표성 확보
경제	- 경제활동참가율, 임금, 관리자 및 임원 비율 등에서 성별격차 해소 - 직업과 직종에서 성별분리 완화
교육	-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공 선택 문제 해결
가정	- 성별 역할과 책임 분리 해소

자료: 여성가족부, 2015, 「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 양성평등기금의 개념

기금의 개념 논의에 기반할 때 양성평등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금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양성평등기금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사업성 기금에 해당한다.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정부의 직접 관리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금의 고유 성격에 따라 교육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금은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던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 근거로 작용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였으며,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유는 사회적 수요와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수요 관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각계의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 모두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는 동일하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접근방식과 주요 정책, 참여 등의 측면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

첫째, 접근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으로 여성정책은 여성 특화적 접근방식을 취하는데 비해 양성평등정책은 남녀 모두를 고려한 접근방식을 취한다. 여성정책은 남성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상황을 우선 개선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중점을 둔다. 이에 비해 양성평등정책은 성불평등 구조 개선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남성문제를 포괄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등 여성의 지위가 여전히 낮은 영역에서는 여성 특화적 접근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주요 정책에 있어서도 양자는 구별된다. 여성정책은 여성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경력단절여성 지원, 여성 폭력 예방 등의 정책이나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비해 양성평등정책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에 초점을 두고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남성 한부모의 부성권 보호 등 남성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정책과는 구별된다.

셋째, 참여 측면에서도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 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양성평등정책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도 강조한다.

이처럼 양성평등정책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상 살펴본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의 비교내용은 <표 2-5>와 같다.

<표 2-5>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의 비교

구분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
접근방식	- 여성특화적 접근 - 남성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상황을 우선 개선하여 양성평등 실현 -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중점	- 남녀 모두를 고려한 접근 - 성불평등 구조 개선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 - 남녀 모두의 문제(남성 문제 포괄)
주요정책	- 여성 지원을 위한 정책·제도 - 경력단절여성 지원, 여성 폭력 예방 등	-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교육·통계 등
참여	- 여성의 주도적 참여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 강조

자료: 여성가족부, 2015, 「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3) 양성평등기금의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

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부의 책임성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동법 제42조). 양성평등기금은 국가의 출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의해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43조). 첫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양성평등 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세부 내용은 <표 2-6>과 같다.

<표 2-6> 양성평등 실현 사업 세부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양성평등정책 촉진	- 성 주류화 조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공표
양성평등 참여	- 적극적 조치 -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에의 여성과 남성 평등한 참여 - 정치 및 경제활동 참여 - 모·부성의 권리 보장 및 일·가정 양립지원 - 여성 인적 자원 개발 및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 성차별 금지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희롱 실태조사 - 복지 및 건강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 양성평등 교육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 양성평등주간 지정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 - 국제협력 및 평화·통일 과정 참여

자료: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둘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²⁾ 넷째,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 지원 사업,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제2절 기금 사업운영 평가

1. 기금평가의 개념

기금평가에 관한 개념은 재정운용평가나 성과평가의 일환으로 기금운용부문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윤수재 외, 2010). 기금운용평가의 목적은 기금운용의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데 있다(기획재정부, 2017b).

기금은 일반적인 예산의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일반 및 특별회계와는 별개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상의 투명성 및 사업수행의 효과성 저하,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감사원, 2003; 박충훈, 2007; 이삼주, 2009; 허명순 2012).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경우에는 상기의 문제점에 더하여 기금활용의 저조함, 여유자금의 생산적 활용 미비,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기금설치,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전문성 부족 등의 추가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조기현, 1997; 윤수재 외, 2010).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기금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평가함으로써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금평가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대상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받게 된다(「국가재정법」 제82조). 또한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해서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기금운용평가의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되어야 하고 그 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2) 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 체결 및 이행,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지원, 국제개발협력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국내외 거주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 참조).

기금운용평가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기금평가 유형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사업운영평가는 부처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 자체 평가 후, 이를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하는 메타방식으로 수행한다. 이에 비해 기금존치평가와 자산운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기금운용평가단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존치평가반과 자산운용평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7b).

2. 기금평가의 유형

기금평가는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존치평가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금은 한 번 설치되면 폐지하기 곤란하고 기금 간에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되거나 세출예산사업과의 차별성이 없는 기금이 계속 존치·운영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목적 및 기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존치의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기금존치평가는 3년마다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금 제도개선 및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금존치평가의 목적은 설치·운영 중인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존치 여부를 재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제도의 개선 및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16a).

기금존치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은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표 2-7>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기준
개별사업의 적정성	사업설치 목적의 유효성	1-1. 사업의 설치목적 및 추진근거가 명확한가? 1-2.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나 방향이 당초 또는 변경된 설치목적과 일관적인가? 1-3. 사업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가?
	사업주체의 적합성	2-1. 사업을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으로 집행할 경우 적절한 집행이 불가능한가? 2-2. 사업을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가?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3-1.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 3-2. 타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
재원구조의 적정성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1-1. 평가전년도 자체수입이 [사업비+기금운영비+공차기금이자상환+차입금이자상환]의 2/3 이상인가? 1-2. 평가년도 계획 상 총 수입에서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하인가? 1-3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재원이 없는가?
	중기가용 자산규모의 적정성	2-1. 기금이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기금존치의 타당성	기금목적의 유효성	1-1.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의 설치목적이 유효한가? 1-2.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설치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타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2-1.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가?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3-1.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6a, 「2016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한편 기금존치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금존치평가 지표는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등의 지표로 구성된다. 먼저, 개별사업의 적정성 지표는 기금이 수행하는 모든 개별사업에 대해 3개의 세부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재원구조의 적정성 지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이 보유해야 할 규모에 대해 2개의 세부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기금존치의 타당성 지표는 기금목적의 유효성 및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각 평가지표별 세부평가지표는 <표 2-7>과 같다.

2) 기금운용평가

기금운용평가는 기금 자산운용 및 사업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금운용평가는 자산운용평가와 사업운영평가로 세분화 된다.³⁾

자산운용평가는 자산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상 자산운용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과 경영평가 대상기금은 매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재정성 기금을 제외한 그 외 기금은 2년 주기로 평가한다. 자산운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기금운용평가단의 자산운용평가반에 의뢰하여 수행한다(기획재정부, 2017b).

자산운용평가는 기금별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전년도 여유자금 평잔 1조원 이상의 대형기금, 여유자금 평잔 1조원 미만인 중소형 기금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기획재정부(2017b)의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따르면 자산운용평가는 기금 규모에 따라 평가지표는 동일하지만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자산운용부문의 평가지표는 크게 ① 자산운용 체계, ② 자산운용 정책, ③ 자산운용집행, ④ 자산운용성과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는 <표 2-8>과 같다.

자산운용평가의 지표는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성된다. 비계량지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6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계량지표는 운용만기별 자산비중에 따라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대상기금 전체에서 상대평가한다. 이를 위해 평가 대상기금 전체를 기준으로 표준정규분포에 의한 9등급 구간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단 계량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보 노력도 지표는 절대평가한다. 계량·비계량 지표 외에 자산운용 체계 등에 대한 개선노력, 국가재정부담 완화 노력 및 단기자금 통합 운용제도 참여, 제출자료의 신뢰도·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운용평가 종합등급(6등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을 산출하고 공개한다. 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평가 기금에 대한 표창, 기금운영비 증액 또는 삭감, 제도개선 권고사항 통보, 심층진단 및 컨설팅, 최하위 기금에 대한 정밀실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7b).

3)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금운용평가 중 자산운용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운영평가에 관한 검토는 다음 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 2-8>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 평가지표

평가지표	대형	중소형
1. 자산운용체계	12.00	15.00
1) 자산운용관련 거버넌스의 적정성	7.0	10.0
① 자산운용 관련 주요 의사결정체계의 구축	3.5	5.0
② 주요 의사결정체계의 대표성, 전문성 및 효율성	3.5	5.0
2)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	5.0	5.0
①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분리와 견제	2.0	2.0
②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	3.0	3.0
2. 자산운용 정책	18.00	20.00
1)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10.0	10.0
①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10.0	10.0
2)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	8.0	10.0
②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	8.0	10.0
3. 자산운용집행	20.00	15.00
1)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	3.0	3.0
① 투자실행과정의 적절성	3.0	3.0
2)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10.0	6.0
②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10.0	6.0
3)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7.0	6.0
① 성과평가 수행	3.0	3.0
② 성과평가 활용 및 관리	4.0	3.0
4. 자산운용성과	50.00	50.00
1) 단기자산의 수익률	35W	35W
①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	7Wa	7Wa
②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20Wa	20Wa
③ 유동성자금 운용수익률	7Wb	7Wb
④ 유동성자금 상대수익률	20Wb	20Wb
⑤ 현금성자금 보유도	8W	8W
2) 중장기자산의 수익률	35(1-W)	35(1-W)
① 중장기자산 3년 운용수익률	10(1-W)	10(1-W)
② 중장기자산 1년 상대수익률	25(1-W)	25(1-W)
3) 위험대비 성과	8.00	8.00
① 3년간 샤프비율	8.00	8.00
4) 운용상품집중도	5.00	5.00
① 운용상품집중도	5.00	5.00
5) 공공성확보 노력도	2.00	2.00
① 공공성확보 노력도	2.00	2.00

주: Wa(현금성자금/전체자산)+Wb(유동성자금/전체자산)=W(단기자산)

1-W=(중장기자산/전체자산)

자료: 기획재정부, 2017b,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 사업운영 평가

1) 의의 및 평가목적

사업운영평가는 자산운용평가와 함께 기금운영평가의 핵심 영역 중 하나로 특정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사업운영평가의 목적은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고 국민과 국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기획재정부, 2016b). 평가대상은 소관기관에 따라 사회·경제·행정 분야로 분류된다. 사업운영평가는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관리 및 결과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평가내용

사업운영평가는 목표달성의 정도,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사업목적과 내용의 일치성을 평가한다. 다만 기금의 필요성,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차별성과 같은 부분은 기금준치평가의 평가대상과 일부 중첩된다고도 볼 수 있다. 사업운영평가의 내용은 2006년부터 성과관리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성과를 계획, 관리, 성과·환류 등의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후 기금 사업운영평가체계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다. 2015년 이전까지는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단계의 11개 평가지표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후 2015년부터 ‘통합 평가’가 도입·운영됨에 따라⁴⁾ 평가대상을 기존 1/3에서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되고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가 실시되게 되었다. 이에 평가대상 확대에 따른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간소화하고 관리 및 결과 단계의 4개 지표로 대폭 축소하였다(기획재정부, 2016b).

관리단계의 평가내용은 ‘사업관리의 적절성’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등 2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결과단계에서는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등 2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되고 있다(<표 2-10> 참조)

4) 통합 평가의 대상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사업운영평가’ (「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지역발전사업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등이 포함된다.

<표 2-9> 2015년 이전 사업운영 평가영역 및 지표

구분(점수)		평가지표
계획 (20)	사업 계획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당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리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3-정보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가? 3-정보화②.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성과/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2,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표 2-10> 2015년 이후 사업운영 평가영역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관리 (40)	사업관리의 적절성 (40)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20)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20)
결과 (60)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60)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40)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20)
계(100)		
가점	(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지표(R&D의 경우 질적 지표)로 설정(3)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4)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 서비스 개선 성과(4)

자료: 기획재정부, 2016b,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1) [사업운영부문].

이외에도 사업운영평가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공통 분야에서는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일반재정 분야 기금일 경우 사업운영과정에서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평가지표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분야에서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 서비스 개선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추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가점 지표들의 경우 다음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관리 및 결과단계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 지표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단순 산출지표가 아닌 결과지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3) 평가방법

사업운영평가는 부처 자율평가 후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부처에서는 사업관리 및 결과 단계의 4개 공통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평가과정·결과·지출 구조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2015년부터 기금 사업운영평가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기획재정부 등 평가부처는 기존의 사업별 전수확인 방식에서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기획재정부, 2016b, p. 2). 부처의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자체평가와 점검기관의 평가점수 간 차이가 20점 이상일 경우 감점하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운영평가는 소관기관에 따라 사회·경제·행정 분야로 분류된 부문별 기금은 사업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총점에 따라서 다음 의 표와 같이 총 5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또한 하나의 관리과제가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평가가 곤란한 경우 부분점수 부여가 가능하며, 부처의 관대한 평가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상대평가 제도도 병행되고 있다.

4) 평가결과 활용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에 반영됨으로써 평가결과의 환류가 이루어진다. 사업운영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사업비를 10% 이상 삭감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기금 사업운영 평가 사례

1. 경기도

1) 개요

경기도는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1996년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997년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2009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금 역시 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경기도 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에 의해 설치·운영된다. 성평등기금은 도의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조례 제26조). 하지만 2000년도에 실제 경기도가 성평등기금을 조성한 재원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도비 출연금(100억원)에 의해 조성되었다.

경기도는 지난 2000년에 102억 원을 기금으로 확보하고 당해부터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 일반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 도 자체사업으로 운영해오다가 2010년부터 기획공모사업 분야를 폐지하고 현재까지 일반공모사업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성평등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출산·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그 밖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동조례 제27조).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자격, 지원 사업 분야, 지원규모 및 원칙 등은 <표 2-11>과 같다.

경기도 성평등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의 역할은 경기도 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운용, 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에 대해 심의한다(「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

<표 2-11>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자격	민법 제32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양성평등 확산 등 공모 지원분야 사업내용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지원 사업 분야 (8개 유형)	① 양성평등 확산사업 ②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③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 ④ 가족관계 증진사업 ⑤ 이주여성 정착지원 사업 ⑥ 여성경제활동 촉진 사업 ⑦ 결혼 및 출산장려 촉진 사업 ⑧ 여성가족정책 발전 사업
지원규모 및 원칙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내 - 지원기준 : 단체별 1개 사업만 응모
지원 제외대상	-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 단체의 홍보,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최근 3년 연속하여 지원받은 동일단체의 동일한 사업 - 최근 2년 이내(2015년, 2016년)에 기금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자료: 경기도, 2016, 「2017년도 경기도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

2)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경기도 성평등기금 사업운영평가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결과 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의 선정평가는 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후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한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선정평가지 고려사항은 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②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③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성, ④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 ⑤ 양성평등정책 관련 활동 및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업선정평가에서 활용되는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안태운 외, 2015). 사업선정시 평가영역은 크게 사업형성, 사업집행, 사업성과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7개 평가지표로 측정한다. 사업형성 영역의 평가지표는 내용적합성(20점)과 사업 참신성(10점)으로 구성되며, 총 30점의 배점이 부여된다. 사업집행 영역의 평가지표는 프로그램 충실성(15점), 단체의 전문성(15점), 사업수행능력(10점)이 포함되며, 총 40점의 배점이 부여된다. 사업성과 영역에는 지역파급효과(15점), 사업의 효과성(15점) 등 2개의 평가지표가 구성되며, 총 30점의 배점을 부여한다(<표 2-12> 참조). 선정평가 최종 점수는 심사

위원 평가점수의 합산을 통해 평균값을 산출하고 분야별로 순위를 정한다.

<표 2-12> 경기도 성평등기금 사업 선정 평가표

구 분		배점(가중치)
사업형성 (30점)	내용적합성	20
	사업 참신성	10
사업집행 (40점)	프로그램 충실성	15
	단체의 전문성	15
	사업수행능력	10
사업성과 (30점)	지역파급효과	15
	사업의 효과성	15
합계		100

자료: 안태운 외, 2015,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사업 운영효율화 방안」.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중간평가와 종합평가가 이루어진다. 중간평가 방법은 현지확인 평가 및 서면평가를 병행한다. 종합평가는 평가지표에 의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한다. 성평등기금 사업평가체계는 3개 평가영역, 9개 평가지표, 14개의 세부측정지표로 구성된다.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60점)은 외부 전문가 활용정도(20점), 사업관련 홍보활동(10점), 사업참여율 목표 달성도(10점), 사업기간 준수(20점) 등 4개 지표에 총 6개의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사업관리(70점)는 회계관리의 적정성(40점)과 현장방문점검(30점) 등 2개 지표에 회계절차의 준수여부 및 사업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등 2개의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사업결과 및 효과성(70점)은 사업결과보고서의 기술의 충실성(20점), 사업결과의 자체분석과 평가(30점), 사업결과의 효과성(30점) 등 3개 지표에 총 5개의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한편 성평등기금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모두를 사용하며, 각각 7개 평가지표로 구성비율은 동일하다. 또한 사업평가 총점 200점중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각각 100점씩 동일하게 배분되어 있다.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그리고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정의 및 점수 산출방식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경기도 성평등기금 사업운영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세부내용	지표 정의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60점)	외부 전문가 활용정도	- 외부전문가 계획대비 활용 정도(10) - 외부전문가의 전문성(10)*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외부전문가 활용이 계획대로 실천되었는가
	사업관련 홍보활동	- 홍보활동의 계획대비 추진 정도(10)	홍보활동을 얼마나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기금사업임을 명시하였는가
	사업 참여율 목표 달성도	- 사업참여율 목표달성도(10)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참여율 목표의 달성도
	사업 기간 준수	- 사업기간 준수정도(10) - 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의 기한 준수(10)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업기간과 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기한의 준수 여부
사업 관리 (70점)	회계관리의 적정성	- 회계절차의 준수 여부(40)	사업비 집행시 회계절차를 준수하였는가
	현장방문 점검	- 사업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30)*	사업이 얼마나 면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사업결과 및 효과성 (70점)	결과보고서 기술의 충실성	- 결과보고서 내용 기술의 충실성(10)* - 사업평가설명회 참석(10)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
	사업결과의 자체 분석과 평가	-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 분석(10)* -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10)* - 사업관련 향후 계획 및 발전방안 제시(10)*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과 평가가 사업결과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추었는가
	사업결과의 효과성	- 사업결과의 효과성(20)*	사업결과가 해당 사업의 고유 목적 및 기금의 본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주: *는 정성평가를 의미함.

자료: 안태운 외, 2015,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사업 운영효율화 방안」.

3) 평가결과의 활용

경기도는 성평등기금 사업 최종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사업이 수행된 사례들 중에서 평가위원들의 최종 협의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사례의 사업내용을 홍보하는데 활용한다(안태운 외, 2015). 하지만 전년도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선정에 활용(가산점 또는 감점)되는 제도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2. 부산광역시

1) 개요

부산광역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1997년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여성발전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1조). 2002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후 2004년까지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조성을 완료하고, 2016년까지 100억원으로 목표액을 상향하였다(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2016). 최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과 사용 용도를 변경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라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2015년 「부산시 기금 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조성규모 100억 미만 기금과 당해 연도 사업비 전액 전입금 의존기금, 조성액 대비사업비 사용률이 저조한 기금, 사업비 소규모 기금 등 1개국 1개 기금원칙을 설정하고 실국 소관의 유사기금 통폐합을 실시하였다.

<표 2-14>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기금 통합 운용사항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기존설치조례	존치기한
운용계정	변경전		
양성평등계정	여성발전기금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2020.12.31
	한부모가족지원기금	부산광역시 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	2018.12.31
출산장려계정	출산장려기금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2019.12.31
청소년육성계정	청소년육성기금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31

자료: 홍미영 외, 2016,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서 재인용.

(부산광역시, 2016, 「여성가족국 2016년 기금운용계획 내부자료」).

부산시의 기금 통합운영방침에 따라 2015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추가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4개 기금인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출산장려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해 ‘양성평등기금’을 ‘출

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용도를 3개 계정(양성평등계정, 출산장려계정, 청소년육성계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 41조).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역시 양성평등계정에 통합 운영하고 있다(홍미영 외, 2016).

<표 2-15>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양성평등관련 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지부 사무소 포함)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양성평등관련 비영리 법인 - 부산광역시 소재 양성평등관련 연구기관, 학교법인 (30% 범위 내 지원)
지원 사업 분야 (6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②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③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④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 사업 ⑤ 취약계층 여성 역량강화 ⑥ 여성가족정책발전 사업
지원규모 및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 사업별 15백만원 - 지원원칙: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결정됨 - 지원기준 :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으로 3년 연속 양성평등기금(舊 여성발전기금)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업(장기선정사업 일몰제 적용) - 단순 집합 교육,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이벤트성 및 일회성 사업 - 직원 급여나 사무실 경비 등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비 - 자체인력 및 조직 활용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 등 기금 낭비 사업 - 보조금 횡령 등으로 단체장 등 형사 처벌을 받은 단체의 사업 - 전년도 기금사업 추진 평가결과 부진단체 - 최근 2년 이내(2015년, 2016년) 사업 중단 및 포기단체 등

자료: 부산광역시, 2017, 「2017년도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토대로 필자가 구성.

부산광역시의 양성평등기금은 운영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지정공모사업과 자유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지정공모 사업은 부산광역시의 시정 역점추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유공모 사업은 단체 고유의 목적 사업에 중점을 둔다.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 사업분야는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

사업, 취약계층 여성 역량강화, 여성가족정책발전 사업 등 6개 분야이다. 부산광역시의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자격, 지원 사업 분야, 지원규모 및 원칙 등은 <표 2-15>와 같다.

2)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부산광역시의 양성평등기금 사업운영평가는 공모사업 선정평가와 사업결과 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의 선정평가는 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실무부서(소관팀)에서 1차 검토 후, 총괄팀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결과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 평가에서 활용되는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산광역시, 2017). 사업선정시 평가영역은 ① 적합성, ② 효과성, ③ 독창성, ④ 사업수행능력, ⑤ 적정성, ⑥ 기타 등으로 구성되며,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각 평가영역별로 상이한 배점(가중치)을 부여하고 있으며, 평가영역별 평가사항 및 배점은 <표 2-16>과 같다.

<표 2-16>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 평가표

평가영역(심사항목)	평가지표(평가사항)	배점(가중치)
적합성	양성평등기금 지원목적과의 부합성, 타당성	20
효과성	사업수혜대상의 보편성, 기대 및 파급효과	20
독창성	사업의 참신성, 새로운 방식의 사업 등	15
사업수행능력	자부담 비율 및 부담능력,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	15
적정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 지원예산 편성의 적합 여부 등	20
기타	2016년도 기금 지원 사업 평가결과	10
합 계		100

자료: 부산광역시, 2017, 「2017년도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는 중간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병행한다. 1차적으로는 각 사업분야별 담당팀에서 서면평가를 진행하며, 2차적으로는 기금총괄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한다(부산광역시 2015a).

평가기준은 편성목 신설 등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사업집행 여부, 회계지

출의 정당성 여부, 계획집행의 충실성, 시민에 대한 사업목적 달성도이다. 첫째, 편성목 신설 등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사업집행 여부와 관련된 평가항목은 예산항목 이외에 추가 지출 여부, 지침에 제시된 기준금액 초과여부 등이며, 회계지출의 정당성 여부는 보조금 지출시 직접적 경비에 한정, 지출결의시 보조금과 자비구분, 급여성격 등 운영경비 지출여부, 원천징수 및 세금신고 여부, 통장과 회계장부의 관리 정확성, 회계처리지침 준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계획집행의 충실성은 당초 의도한 목적달성 가능 여부, 사업계획 일정대로 진행가능한지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셋째, 시민에 대한 사업목적 달성도 평가기준은 사업대상의 참석자수(미달자수), 사업시행 전·후에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조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표 2-17〉 참조).

〈표 2-17〉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중간평가 기준 및 항목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편성목 신설 등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사업집행	- 예산항목 이외에 추가 지출 - 지침에 제시된 기준금액 초과여부 등
회계지출의 정당성 여부	- 보조금 지출시 직접적 경비에 한정 - 지출결의시 보조금과 자비구분 - 급여성격 등 운영경비 지출여부 - 원천징수 및 세금신고 여부 - 통장과 회계장부의 관리 정확성 등 - 회계처리지침 준수 여부 등
계획집행의 충실성	- 당초 의도한 목적달성 가능 여부 - 사업계획 일정대로 진행가능 여부 등
시민에 대한 사업목적 달성도	- 사업대상의 참석자수(미달자수) - 사업시행 전·후에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조치 여부 등

자료: 부산광역시, 2015b, 「2015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중간평가표」.

부산광역시의 양성평등기금 사업결과 평가영역은 ① 형식평가, ② 내용평가, ③ 단체실적 등으로 구성된다(부산광역시, 2016). 평가영역별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8〉 부산광역시 사업평가표

구분	평가 기준	세부평가지표	배점
계			100점
형식 평가 (20)	1.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10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종료 후 1주일 이내 : 3점 제출기한 종료 후 1주일 초과 : 2점	5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종료 후 1주일 이내 : 3점 제출기한 종료 후 1주일 초과 : 2점	5
	2.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도		10
	정산보고서	보고서 형식적 완성정도	3
	사업실적보고서	보고서 형식적 완성정도	4
	사업성과물	성과물(사진, 책자 등) 제출 및 사업성과 달성 기여도	3
내용 평가 (70)	1. 단체의 사업추진능력		10
	사업추진 체계성·전문성	사업추진 조직·인력 구비 및 전문성 확보 정도	5
	회원의 책임성(참여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참여자에 대한 일비 지급 등 고려)	5
	2. 목표 달성도		20
	추진일정 달성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가? - 1월 이상 ~ 2월 미만 지연 (4점) - 2개월 이상 지연 (1-3점)	6
	사업계획(양)달성도	계획된 사업은 모두 추진되었는가? - 80%이상 (5-6점), 70%-80% 미만 (4점), 70%미만 (3점 이하)	6
	사업목표(질)달성도	기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 80%이상 (7-8점), 60%-80%미만 (5-6점), 60%미만 (5점 미만)	8
	3. 효율성		15
	사업성과 객관성	사업성과 허위 또는 과장 여부	4
	예산대비 사업성과	사업추진 성과 정도, 자체평가 및 분석 정도	5
	사업홍보전략	언론홍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후원 표기' 여부, 기타홍보 등	6
	4. 책임성(예산분야)		25
	예산집행의 적정성	당초계획 대로 집행되었는가, 임의로 예산집행 계획을 변경한 사례 등	8
예산집행의 적법성	보조금의 오·남용, 낭비여부, 체크카드 미사용, 현금거래 등	8	
정산서 신뢰도	증빙서류 신뢰도, 첨부 정도 등	9	
단체 실적 (10)	지역사회기여도	여성발전사업 기여도 등	5
	양성평등사회 기여도 사업 사회적 파급효과	프로그램참여 인원수, 향후 활성화 방안 언급 등	5

【종합의견】

자료: 부산광역시, 2016, 「사업(단체별) 평가표」.

첫째, 형식평가는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여부와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도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 10점씩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여부(5점),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여부(5점)를 세부 평가기준으로 구성하고 있다.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도는 정산보고서 완성도(3점), 사업실적보고서 완성도(4점) 및 성과물 제출 및 사업성과 달성 기여도(3점) 등의 세부 평가기준을 활용한다. 둘째, 내용평가는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10점), 목표 달성도(20점), 효율성(15점), 예산 책임성(25점) 등의 평가기준으로 구성된다.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은 사업추진의 체계성·전문성(5점), 구성원의 참여도(5점) 등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목표달성도는 추진일정 달성도(6점), 사업계획(양) 달성도(6점), 사업목표(질) 달성도(8점)로 측정되며, 효율성은 사업성과 객관성(4점), 예산대비 사업성과(5점), 사업 홍보전략(6점)으로 평가한다. 예산분야 책임성은 예산집행의 적정성(8점), 예산집행의 적법성(8점), 정산서 신뢰도(9점) 등으로 구성된다. 셋째, 단체실적은 지역사회 기여도(5점)와 사업의 사회적 파급효과(5점) 등의 2개 평가기준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된 점수를 토대로 지원 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3등급(우수, 적정, 미흡)으로 평가한다.

3) 평가결과의 활용

부산광역시의 경우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전년도 사업 최종 평가결과는 다음 년도 사업 선정평가에서 가감점을 부여한다. 가감점 비율은 100점 만점의 10점으로 반영된다(부산광역시 2017). 이외에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단체는 다음 년도부터 2년간 지원할 수 없다.

3. 제주특별자치도

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을 제정한 후,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였다.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양성평등기금의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은 도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외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조례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까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과 같이 여성중심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후 2015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되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취약가족 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동조례 제10조).

<표 2-19>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자격		-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법인) -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성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법인) - 제주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지원 사업 분야 (8개 유형)	기획공모 분야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여성·아동이 안전한 환경조성 등) ②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정책 강화사업
	자유공모 분야	① 성차별 개선, 성폭력·성매매 예방 등 여성권의 증진사업 ② 여성의 사회·경제적 리더십 역량강화 사업 ③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조성사업 ④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⑤ 다양한 가족 복지 증진사업 ⑥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지원 사업 등
지원규모 및 원칙		- 지원규모 : 기획공모분야(사업당 최소 2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 이내) 자유공모분야(사업당 최소 3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 - 지원기준 : 단체별 1개 사업만 응모
지원 제외대상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유사·중복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나 단체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장기선정사업 일몰제 적용) - 사무실이 없는 법인·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 순수 종교 활동 목적 법인·단체 - 유사단체(인적, 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 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자체인력 및 조직 활용이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 등 기금 낭비 사업 - 영리 법인·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7,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교육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유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을 통해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공모 분야는 도 역점 추진과제로 사회·경제적 변화 등 시대흐름을 반영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자유공모 분야는 여성권익신장 및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시킬 수 있는 여성과 도정발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주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자격, 지원 사업 분야, 지원규모 및 원칙 등은 <표 2-19>와 같다.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1/3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1/3을 넘어서는 안 된다.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등에 관해 심의한다(동조례 제13조).

2) 평가내용 및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운영평가는 공모사업 선정평가와 사업결과 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 선정평가는 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2017년 기금 지원 사업 외부전문가 심사를 실시한 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하고 서면평가의 합계로 최종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단, 기획공모 분야 사업인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직접 사업설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선정평가 체계는 평가영역(4개), 평가지표(7개), 세부 평가지표(17개)로 구성된다. 평가영역은 ① 참여 적정성, ② 사업계획, ③ 사업운영, ④ 사업성과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표 2-20> 참조).

참여 적정성 영역은 사업신청단체의 적정성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으로는 신청 적정성과 사업신청 단체의 사업추진 여부를 가부만으로 결정한다. 사업계획영역(35점)은 사업계획의 적합성을 측정하며 사업목표의 적절성(15점), 사업계획의 충실성(20점)을 측정한다. 사업운영 영역(135점)은 크게 사업운영의 적절성(60점), 예산관리의 적절성(45점), 사업추진단체의 전문성(30점)으로 나누어진다.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25점), 참가대상의 적절성(5점), 사업관리인력의 적절성(15점), 사업홍보전략(10점),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5점)으로 구성된다. 예산관리의 적절성은 예산관리의 충실성(10점), 예산집행의 적정성(25점), 회계의 투명성(10점) 등의 평가지표로 측정된다. 사업추진 단체의 전문성은 사업추진의 전문성(15점), 사업추진의 체계성 및 완성도(15점)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이에 더불어 전년도

‘우수’ 기관에게는 가산점 5점을 추가로 부여하고 ‘미흡’ 기관에게는 감점 5점을 적용한다.

<표 2-20>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선정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서면평가			합계
			내부	외부	기금운용 심의위원	
참여 적정성	사업신청 단체 적정성	신청 적정성				가부
		사업 신청 단체의 사업 추진 여부				가부
사업 계획 (35)	사업계획의 적합성 (35)	사업목표의 적절성		15		15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20
사업 운영 (135)	사업운영의 적절성 (60)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15	10	25
		참가대상의 적절성			5	5
		사업관리 인력의 적절성		5	10	15
		사업홍보전략		5	5	10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5		5
	예산관리의 적절성 (45)	예산관리의 충실성			10	10
		예산집행의 적정성		15	10	25
		회계의 투명성		10		10
	사업추진 단체의 전문성 (30)	사업추진의 전문성		10	5	15
		사업추진의 체계성 및 완성도		10	5	15
사업 성과 (80)	사업효과성 (55)	지원비용대비 사업효과		15	15	30
		사업의 파급효과		15	10	25
	사업기여도 (25)	사업의 향후 발전성		10	15	25
계				150	100	250
※ 전년도 평가결과 총점 반영 우수기관 가산점 5점, 미흡기관 감점 5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7,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교육자료」.

한편 제주도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는 2016년까지는 서면평가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2017년부터 사업현장 평가 중심으로 평가방법을 전환하였다. 사업현장 평가는 상시평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로 시행된다. 상시평가는 모니터링단 평가에 의해 수행되며, 중간 및 최종평가는 자유공모와 기획공모 사업 모두 현장평가가 진행되며, 기획공모 사업의 경우 최종 공개평가도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평가방법은 추진실적 보고서, 정산보고서, 추진성과물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현장 모니터링 평가는 별도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사업 현장평가 체계는 평가영역(2개), 평가지표(4개), 세부 평가지표(14개)로 구성된다. 평가 영역은 크게 사업운영(55점)과 사업성과(45점) 부분으로 나뉜다. 사업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는 사업운영의 적절성과 사업의 평가로 구성된다. 첫째, 사업운영 적절성의 세부 평가표는 사업목적의 명확성/구체성(5점), 사업추진 과정의 적절성(5점), 참가 대상의 적절성(10점), 사업 관리 인력의 적절성(2점), 예산집행의 적절성(20점), 사업 홍보(3점), 양성평등기금 사업 명시 여부(2점)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예산집행의 적절성은 사업비 정산검사를 반영한다. 정산검사는 정산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 여부,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둘째, 사업평가는 현장방문 일정 협력(3점), 현장평가 제공 여부(5점) 등을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사업성과 영역은 사업의 효과성(25점)과 사업의 기여도(20점) 평가지표로 나뉜다. 첫째, 사업의 효과성은 사업목표의 완수정도(10점), 성과지표 대비 목표 달성 정도(10점), 참가자 만족도(5점) 등 3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참가자 만족도는 기금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 또는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가 반영된다. 이는 사업 참여 인원수 증대를 통해 사업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둘째, 사업의 기여도는 양성평등기금 부합성(10점), 사업발전성(사업효과성)(10점) 등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한다. 평가 점수는 대부분 3등급(미흡, 보통, 우수)으로 평가되고, 일부 지표에 한정하여 2등급(미흡, 우수)으로 평가한다.

<표 2-2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현장 모니터링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배점	평가점수
사업 운영 (55)	사업운영의 적절성 (47)	사업목적의 명확성·구체적	5	1/3/5(미흡/보통/우수)
		사업추진 과정의 적절성	5	1/3/5(미흡/보통/우수)
		참가 대상의 적절성	10	3/6/10(미흡/보통/우수)
		사업관리 인력의 적절성	2	1/2(미흡/우수)
		예산집행의 적절성	20	5/10/15/20 (아주미흡/미흡/보통/우수)
		사업 홍보	3	1/3/5(미흡/보통/우수)
		양성평등기금 사업 명시 여부	2	1/3/5(미흡/보통/우수)
	사업의 평가 (8)	현장방문 일정 협력	3	1/3(미흡/우수)
		현장평가 제공 여부	5	1/3/5(미흡/보통/우수)
		총 점		80
사업 성과 (45)	사업효과성 (25)	사업목표의 완수정도	10	3/6/10(미흡/보통/우수)
		성과지표 대비 목표 달성 정도	10	3/6/10(미흡/보통/우수)
		참가자 만족도	5	1/3/5(미흡/보통/우수)
	사업기여도 (20)	양성평등기금 부합성	10	3/6/10(미흡보통/우수)
		사업의 발전성(사업효과성)	10	3/6/10(미흡/보통/우수)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7,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교육자료」.

3) 평가결과의 활용

제주도의 경우 사업 최종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전년도 사업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 년도 사업 선정 시의 평가에 반영되어 ‘우수’ 기관의 경우 가산점 5점을 부여하고 ‘미흡’ 기관의 경우 감점 5점을 반영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이와 함께 사업비 정산검사를 통해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을 환수하고 집행 잔액을 세입조치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3장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사업 운영현황 분석

제1절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현황

1.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배경 및 법적근거

수원시는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1998년 여성발전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 1월 12일에는 「수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수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금 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4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하여 조성·운영되고 있다(수원시, 2017).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설치목적은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원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토대로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고 있다(「수원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44조).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 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②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 ③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④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⑤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⑥ 영·유아 보육 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⑦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⑧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⑨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동조례 제45조). 기금용도를 기준으로 이전 개정 이전과 이후 내용을 비교해 보면 ‘성평등’ 개념이 ‘양성평등’ 개념으로 변화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면서 이전의 정책 접근방식 및 정책수단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법개정의 취지(여성가족부, 2015)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수원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표 3-1>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

조항	조문
제44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5.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8.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9.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6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시작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7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48조 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시작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총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1조 준용규정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자료: 법제처, 2017,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조성내역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이며, 2009년에 목표액을 조성하였다(이영안, 2015; 수원시, 2017).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013년도 5,192,196천원에서 2016년도 5,020,727천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집행이후 조성액은 4,851,578천원으로 조성목표액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수원시, 2017).

<표 3-2> 연도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연도	계	
2013년도 말 조성액	5,192,196	
2014년도 말 조성액	5,186,452	
2015년도 말 조성액	5,179,444	
2016년도 말 조성액	5,020,727	
2017년도 말 조성 예상액	4,851,578	

자료: 수원시, 2014-2017, 「각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속적인 감소원인은 기금의 이자수입 감소에서 기인한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된다. 특히 2011년도부터는 전입금 없이 이자수입을 통해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인 이자수입을 살펴보면 2012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이자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자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은 지속됨에 따라 전체적인 기금조성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금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운영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3> 연도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설치연도 - 2008	5,360,652	4,300,000					1,060,652	
2009	477,335	200,000					277,335	
2010	272,444	100,000					172,444	
2011	170,464						170,464	
2012	177,891						177,891	
2013	167,520						167,520	
2014	141,097						141,097	
2015	150,235						150,235	
2016	60,175						60,175	
2017	80,851						80,851	
계	7,058,664	4,600,000					2,458,664	

자료: 수원시, 2014-2017, 「각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3.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전액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인 비용자성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4> 참조).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집행액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155,69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다소 축소하여 148,157천원, 2015년도 166,367천원, 2016년도에는 201,800천원을 집행하

였으며, 2017년은 250,000천원을 사업예산액으로 설정하였다(수원시, 2017). 이처럼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집행규모는 2014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자수입 대비 사업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전후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는 이자수입이 집행액(사업비)보다 높지만, 2014년도부터는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보다 사업비 집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13년도까지는 당해 연도 발생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사업을 지원하는 반면, 2014년도부터는 이자수입 범위를 초과하여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6년도의 경우 전년도인 2015년에 비해 이자수입과 사업비의 차이(2015년: -16,132천원, 2016년 -159,990천원)가 급증하였다. 2017년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집행액은 250,000천원이며,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보다 169,149천원 많은 금액이 양성평등기금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

<표 3-4> 연도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잔액변동
설치연도 - 2008	707,360	707,360						4,653,292
2009	169,904	169,904						307,431
2010	102,613	102,613						169,831
2011	141,601	141,601						28,863
2012	145,220	145,220						32,671
2013	155,698	155,698						11,822
2014	148,157	148,157						△7,060
2015	166,367	166,367						△16,132
2016	220,165	220,165						△159,990
2017	250,000	250,000						△169,149

자료: 수원시, 2014-2017, 「각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한편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건수 및 평균 사업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5〉 참조). 2014년도의 지원 사업건수는 34개 사업이며, 평균 사업비는 4,357천원이며, 2015년에는 23개 사업에 7,233천원, 2016년에는 21사업에 9,609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2014년 이후 지원 사업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 연도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합 계		
	사업 건수	집행액	사업당 평균집행액
2013	29	155,698	5,368
2014	34	148,157	4,357
2015	23	166,367	7,233
2016	21	201,800	9,609

자료: 이영안, 2015, 「수원시 여성발전기금 현황 분석」; 수원시, 2014-2017 「각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제2절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운영 현황

1. 사업 추진과정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추진과정은 매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과정은 양성평등기금 운용·지원계획 심의,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지원 사업 심의 및 선정단계 등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6〉 참조).

첫째, 양성평등기금 운용·지원계획 심의단계이다. 양성평등기금 운용·지원계획 심의단계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한다.

둘째, 공고 및 신청서 접수단계이다.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11-12월에 그 다음해에 시작될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고한다. 사업공고 후 기금사업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방향, 지원신청서의 작성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셋째,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심의 및 선정단계이다. 본 단계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금을 결정한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사

업계획, 사업진행, 사업예산, 사업평가를 심사하여 자체사업을 선정한다. 선정을 통지받은 단체는 3-10월까지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수행한다.

〈표 3-6〉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추진 과정

추진사항	일 정	비 고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2015. 10. 23(금)	2016년 지원 사업 지원계획(안) 심의
2015년 기금 정산검사	2015. 11. 2.(월)~12. 11.(금) [40일간]	여성정책과
2016년 기금 지원계획 공고	2015. 11. 16.(월)~12. 15.(화) [30일간]	수원시 홈페이지(공고)
2016년 기금 사업설명회	2015. 12. 10(목)	여성정책과
2016년 기금 신청접수	2015. 12. 16.(수)~12. 30.(수) [15일간]	여성정책과
2016년 기금 신청서류 검토	2016. 1. 4(월)~1. 22(금) [19일간]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2016. 1. 25(월)~1.28(목)	지원 사업 심의 및 선정
2016년 지원 대상 사업 결정 공고 및 통보	2016. 2. 1.(월)	수원시 홈페이지 지원 대상 단체
2016년 지원 사업 시행지침 교육	2016. 2월 중	지원 대상 단체
2015년 기금 자체평가 분석	2016. 3월 중	여성정책과
2016년 기금 지원 예산 교부	2016. 3월 중	여성정책과
2016년 기금 지원 사업 추진	2016. 3월~10월	지원 대상 단체 여성정책과
2016년 기금 지도·점검	2016. 7월~9월	여성정책과
2016년 기금 자체평가 분석	2017. 1월 중	여성정책과

자료: 수원시, 2015c, 「2016년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 신청자격 기준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한 단체이어야 한다. 둘째,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양성평등(여성발전·여성정책)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1년 이상)하는 대학·연구소(원), 넷째,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수원시, 2016a).

한편 선정 제외 대상의 경우 ①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비 사업, ② 종교활동 단체, 친목도모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③ 단체의 설립·등록 당시의 고유목적 이외의 행사관련 경비 사업, ④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⑤ 수원시의 범위를 벗어난 도나 전국단위의 행사, ⑥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⑦ 최근 2년 이내에 기금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등이 제외된다. 또한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상 신청할 경우 일몰제를 적용한다(수원시, 2016a).

3. 사업 참여단체 현황

1) 참여단체 현황

수원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4개 단체가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지원하였다(〈표 3-7〉 참조). 2013-2014년의 경우 동일한 단체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일 경우 사업신청 건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4년 동안 5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한 곳도 존재한다.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사업 참여단체 횟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2013-2016년) 2~3회 선정된 단체는 전체의 50%(44개 중 22개)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4년 중 1회 선정된 단체가 29.5%(13개), 4년 동안 매년 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20.5%(9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4년 동안 매년 사업에 선정된 9개 단체가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전체 사업의 37%(40개)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참여단체 유형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참여한 단체 유형을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1개 기관 중 참여단체 유형이 센터(24.8%)와 연합회(21.8%)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있다. 이외에 협회(9.9%), 기타(8.9%), 협의회(7.9%), 복지관(6.9%), 대학교(5.9%) 등이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표 3-7〉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사업 참여단체 현황

(단위 : 개, %)

단체명	빈도	비율	단체명	빈도	비율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6	5.56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경기도지부	2	1.85
영통종합사회복지관	6	5.56	가족사랑교육원	2	1.85
(사)공예문화협회	4	3.70	수원 YMCA	2	1.85
(사)수원여성노동자회	4	3.70	수원기독교호스피스회	2	1.85
수원 YWCA	4	3.70	수원여성리더회	2	1.85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4	3.70	수원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	1.85
수원여성회	4	3.70	수원이주민센터	2	1.85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4	3.70	수원일하는여성회	2	1.85
수원탁틴내일	4	3.70	전국주부교실수원시지회	2	1.85
치매미술치료협회	4	3.70	(사)다문화가족지원연합회 ¹⁾	1	0.93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4	3.70	(사)대한음악예능원	1	0.93
(사)경기다문화사랑연합 수원지회 수원다문화센터	3	2.78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수원지부	1	0.93
(사)한자녀 더갓기 운동연합 수원시지부	3	2.78	(사)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1	0.93
고운뜰	3	2.78	경기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1	0.93
서호노인복지관	3	2.78	늘품상담 사회적협동조합	1	0.93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3	2.78	다림꽃문화원	1	0.93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3	2.78	소비자교육중앙회수원시지회	1	0.93
수원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	3	2.78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1	0.93
(사)경기시민사회포럼	2	1.85	수원청소년미래보람센터	1	0.93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경기협회수원시지회	2	1.85	아주대학교	1	0.93
(사)수원가족지원센터	2	1.85	영통육아종합 지원센터	1	0.93
(사)수원여성의전화	2	1.85	한국부모교육협회	1	0.93
전체	108	100.00			

주: (사)다문화가족지원연합회의 경우 2016년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포기함.
 자료: 수원시, 2014-2017, 「양성평등위원회(변경전 : 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표 3-8> 연도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참여단체 유형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빈도	비율
센터	8	5	5	7	25	24.8
연합회	7	6	4	5	22	21.8
협회	2	4	2	2	10	9.9
협의회	2	2	2	2	8	7.9
복지관	1	2	2	2	7	6.9
대학교	2	2	2		6	5.9
YWCA	1	1	1	1	4	4.0
청소년단체		1	1	1	3	3.0
YMCA		1	1		2	2.0
교육원		1	1		2	2.0
재단	1	1			2	2.0
연구원		1			1	1.0
기타	3	2	2	2	9	8.9
계	27	29	23	22	101	100.00

자료: 수원시, 2014-2017, 「양성평등위원회(변경전 : 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4. 지원 대상 사업

1) 사업 내용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내용은 큰 틀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수원시는 2015년까지 지정 공모사업과 자유 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해 오다가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2016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통합·운영해 오고 있다.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9> 참조).

2015년 지정 공모사업은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③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④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유 공모사업에는 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②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등, ③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

한 사업의 지원, ④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④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수원시, 2015a).

수원시는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2016년부터는 지정 공모사업과 자유 공모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양성평등기금 사업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에 근거하여 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동법 제43조), ② 양성평등 참여 확대(동법 제51조), ③ 양성평등 문화 확산(동법 제51조), ④ 양성평등 촉진(동법 제51조), ⑤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동법 제51조, 시행령 제27조), ⑥ 다문화 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시행령 제27조), ⑦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수원시, 2016c).

2017년 양성평등기금 사업 내용은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5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기준으로 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②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 ③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④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⑤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⑥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⑦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⑧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⑨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수원시, 2017a).

<표 3-9> 양성평등기금 사업내용

연도	내용	
2013	지정 공모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③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④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
2015	자유 공모	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②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등, ③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④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④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2016	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② 양성평등 참여 확대, ③ 양성평등 문화 확산, ④ 양성평등 촉진, ⑤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⑥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⑦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7	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②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 ③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④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⑤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⑥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⑦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⑧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⑨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수원시, 2014-2017, 「각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2) 목적별 분류에 따른 사업 현황

수원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7개의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지원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9개, 2014년 34개, 2015년 23개, 2016년 21개 사업을 각각 지원하였다. 2014년 이후부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표 3-10) 참조).

<표 3-10>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수

연도	2013	2014	2015	2016	계
지원 사업 수	29	34	23	21	107

자료: 수원시, 2014-2017, 「양성평등위원회(변경전 : 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현황을 목적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3-11) 참조).

첫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된 양성평등기금 사업 중 경제활동 촉진 사업이 29개

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가족기능증진 사업 19개, 여성역량 강화 사업 14개, 이주여성 사업 10개, 기타 사업 8개, 성평등 교육 사업 6개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촉진 사업은 대부분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대비 교육이거나 교육이수를 통해 취업 및 창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이영안, 2015). 이는 수원시가 해당 기간 동안 여성의 취·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기금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시사한다.

둘째, 지정 공모사업 비중이 자유 공모사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3년 동안 86개의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정 공모사업은 72.1%로 자유 공모사업은 27.9%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공모사업은 해당 기간 동안 총 62개에 달하며, 2013년 17개, 2014년 27개, 2015년 18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자유 공모사업은 해당 기간 동안 총 24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3년 12개, 2014년 7개, 2015년 5개의 사업이 각각 추진되었다.

<표 3-11> 2013-2015년 목적별 지원 사업 현황

연도	여성역량 강화		경제활동 촉진		가족기능 증진		이주여성		성평등 교육		기타		계
	지정	자유	지정	자유	지정	자유	지정	자유	지정	자유	지정	자유	
2013	0	5	10	0	2	2	5	0	0	2	0	3	29
2014	4	1	9	1	8	2	3	0	1	1	2	2	34
2015	2	2	8	1	4	1	2	0	2	0	0	1	23
계	14		29		19		10		6		8		86

자료: 수원시, 2014-2017, 「양성평등위원회(변경전 : 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내용도 변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2016년의 경우 22개 사업이 신청되었으나, 1개 단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여 최종 21개 사업이 집행되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이 8개로 가장 많고,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과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각각 4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 3개,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이 2개 등으로 구성된다(표 3-12) 참조).

<표 3-12> 2016년 목적별 지원 사업 현황

연도	다문화가족 등 가족지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기타	계
2016	4	8	3	2	4	21

자료: 수원시, 2017b, 「2017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5. 사업별 사업비 현황

1) 2013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현황

수원시는 2013년에 총 29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지원하였다. 지원 사업비는 총 169,255천원이고, 실제 집행액은 155,698천원이다(<표 3-13> 참조). 지정공모 18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102,450천원으로 자유공모 11개 사업에 대한 66,805천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3> 201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현황

사업비 지원금액		지정공모		자유공모		실집행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	169,255	18	102,450	11	66,805	155,698

자료: 수원시, 2017b, 「2017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2013년 양성평등기금 사업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수원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우먼하우스케어 방법 지원 사업”으로 지원액은 총 22,000천원(자부담 0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여성역량강화 사업인 수원기독교호스피스회에서 실시한 “섬김의 뜨락, 호스피스 돌봄교육사업”으로 지원액이 8,000천원(자부담 10,280천원)이었다. 지원액이 가장 적은 사업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에서 실시한 “여성 가사도우미 교육”으로 지원액은 2,070천원(자부담 200천원)이다. 지원액이 타 사업보다 월등히 많았던 “우먼하우스케어 방법 지원 사업”은 수원시가 2013년 11월에 수원여성근로복지센터, 에스원과 MOU를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수원여성근로복지센터가 수원시 대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센터는 모니터링과 홍보(2,000천원)만을 사용하였다(이영안, 2015).

<표 3-14> 2013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계	
		자부담	지원액
수원여성리더회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1,320	4,040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축하이벤트봉사단 “내리사랑”	930	4,100
수원여성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리더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2,210	9,900
수원지역사회 교육협의회	학교폭력예방 명예교사 양성과정 “통감자 교실”	1,200	6,105
수원기독교호스피스회	Let' s together, 호스피스봉사자 교육사업	10,280	8,000
대한음악예능원	“아름다운 인생 즐거운 재도약” 실버음악 교육강사 양성	1,600	5,760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다문화심리상담사 양성과정	2,000	6,570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창의적 교수법을 활용한 아동지도사 양성과정	800	3,940
수원여성노동자회	정리코디네이터 전문교육	800	4,890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기협회수원시지회	현대의상 리폼수선 전문가 양성과정	1,932	4,800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수원시지회	여성 가사도우미 교육	200	2,070
수원YWCA	수선리폼 전문가 교육	876	4,950
수원 일하는 여성회	실용공예 전문강사 교육	360	5,000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여성전문인력 - 발효호소관리사 양성	3,000	4,350
수원청소년미래보람센터	2013 패션 코디네이터(FC) 양성과정	3,000	4,000
경기다문화사랑연합 수원지회수원다문화센터	다문화가족 행복만들기 프로그램	470	3,600
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도지부	수원시 Mom CEO와 떠나는 비전여행	2,000	5,200
수원가족지원센터	취약가정아동의 가족사랑 배움 교실	300	4,660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	미혼 양육모(싱글맘)가정 지원 사업	1,000	3,800
수원이주민센터	결혼이주여성 온라인(화상) 외국어 강사 양성 과정	830	3,620
전국주부교실 수원지회	행복한 다문화가족의 소통 레시피	3,440	6,600

수원시외국인 복지센터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 운영	235	5,000
아주대학교	엄마와 함께 하는 문화 여행	1,310	5,600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민여성 “통(通), 통(通)바리스타 교실”	1,670	4,500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수원지부	여성폭력 예방 증진 사업	3,280	5,000
수원여성의 전화	폭력 없는 세상 특특!	750	6,700
치매미술치료협회	신나는 향기나무 속 이야기	2,210	7,000
수원시여성단체 협의회	행복한 그녀, 수원여성 소식지 발간	200	7,500
수원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우먼하우스케어 방법 지원 사업	0	22,000

자료: 이영안, 2015, 「수원시 여성발전기금 현황 분석」.

2) 2014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현황

수원시는 2014년에 총 34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지원하였다. 지원 사업비는 총 158,828천원이고, 실제 집행액은 148,156천원이다(〈표 3-15〉 참조). 지정공모 27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121,938천원으로 자유공모 7개 사업에 대한 29,890천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5〉 2014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비 지원금액		지정공모		자유공모		실집행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	158,828	27	121,938	7	29,890	148,156

자료: 수원시, 2017b, 「2017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2014년 양성평등기금 사업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에서 실시한 “다문화심리상담사 보수교육 및 실습(자격증준비) 과정”으로 지원액이 8,027천원(자부담 1,000천원)이었다. 지원액이 가장 적은 사업은 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도지부에서 실시한 “수원시 Mom CEO와 떠나는 비전여행”으로 지원액은 1,693천원(자부담 3,290천원)이다.

〈표 3-16〉 2014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계	
		자부담	지원액
수원여성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지역리더 역량강화교육(2차)	2,050	3,760
경기시민사회포럼	미래 인생을 여는 독서와 내 책 쓰기	3,300	4,840
	책읽어주기 자원봉사 양성교육	3,600	3,100
수원여성인력 개발센터	일·가정 양립 프로젝트	1,000	2,700
수원여성리더회	제2기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1,322	3,320
공예문화협회	행복한 워킹맘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11,700	6,000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수원시지회	현대의상 & 리폼수선(고급반) 양성과정	1,020	5,500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문가정보육사 양성 프로그램	408	3,179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웰빙의류 개발 및 리폼 창업 교육 과정	3,069	5,665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규방 공예 및 천연염색 전문가 양성	3,000	4,230
수원일하는여성회	생필품 생활공방 강사양성 프로그램	832	3,689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다문화심리상담사 보수교육 및 실습(자격증준비) 과정	1,000	8,027
수원탁틴내일	진로지도자 “탁틴커리어맘”	1,800	5,590
치매미술치료협회	시니어 건강미술요법사 양성과정	1,000	5,800
서호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유아구강지킴이 ‘유(幼)치(齒)찬란’	979	4,650
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도지부	수원시 Mom CEO와 떠나는 비전여행	3,290	1,693
한자녀더갓기 운동연합수원시지부	달인 아빠를 찾아라(아빠 육아능력 인증시험)	3,681	3,379
가족사랑교육원(가온누리)	코칭맘 양성	2,441	4,500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아버지의 역할 “변화를 시도하다”	1,000	4,735
수원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우리 아이를 내 아이처럼” 건강한 가정 만들기	1,804	6,636
수원YWCA	조부모 손자녀 교육 오손도손	500	2,740
한국부모교육협회	우리 마을 부모학습코치 양성 과정	1,450	3,200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다문화가족 세대 간 소통과 화합 증진 프로그램	1,070	3,150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	싱글맘 아동양육 지원 사업 “Turning point”	1,000	3,550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역량강화를 통한 양육 공동체 “두런두런” (do Learn Do Learn)	810	2,960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어강사, 영상번역가 양성 과정 - 이중언어 능력 UP “국경넘는 토크(talk talk)” -	575	3,190
수원시외국인 복지센터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 운영	452	5,985
전국주부교실 수원지회	행복한 다문화가족의 소통 레시피	1,573	4,030
수원시여성단체 협의회	꼭 알고 싶었던 그 것	200	5,000
수원탁틴내일	“알아가는 성, 깨닫는 성”	3,000	5,060
공예문화협회	엄마가 행복한 장애아 힐링 공예교실	10,057	3,600
영통종합사회복지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포근한 놀이학교’	720	2,190
수원시여성단체 협의회	행복한 그녀, 수원여성 소식지 발간	200	6,050
수원YMCA	함께 먹는 안전한 먹거리	650	3,750

자료: 이영안, 2015. 「수원시 여성발전기금 현황 분석」.

3) 2015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현황

수원시는 2015년에 총 23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지원하였다. 지원 사업비는 총 167,600천원이고, 실제 집행액은 166,367천원이다(〈표 3-17〉 참조). 지정공모 17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127,820천원으로 자유공모 6개 사업에 대한 39,780천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7〉 2015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비 지원금액		지정공모		자유공모		실집행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	167,600	17	127,820	6	39,780	166,367

자료: 수원시, 2016b, 「2016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2015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수원기독교호스피스회에서 실시한 “가장 아름다운 섬김, 여성호스피스 전문교육 사업”으로 지원액이 9,600천원(자부담

4,100천원)인 반면, 지원액이 가장 적은 사업은 수원YWCA에서 실시한 “동화구연교육: 우리할머니는 이야기꾼”으로 지원액 3,593천원(자부담 359천원)이다.

〈표 3-18〉 2015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계	
		자부담	지원액
가족사랑교육원	코칭 맘 지도자 “품애” 양성	963	8,037
(사)공예문화협회	행복한 워킹 맘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6,350	9,000
수원YMCA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700	6,290
다림꽃문화원	꽃누르미 전문가 양성	750	7,505
서호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유아구강지킴이 “유(幼)치(齒)찬란”	650	4,550
수원YWCA	동화구연교육 “우리할머니는 이야기꾼”	359	3,593
(사)경기다문화사랑연합 수원시지회수원다문화센터	새로운 도전 다문화가족 한국어 정복	624	6,740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반 운영	1,100	8,560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워킹대디를 위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스칸디 대디를 꿈꾸다”	900	8,990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문가정보육사 양성프로그램	660	5,960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강사 양성과정	1,000	6,280
수원여성회	성인지 미디어 강사단 양성을 통한 청소년 미디어캠프	2,079	9,358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규방공예/천연염색 전문가양성 심화과정	2,800	6,490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행가래(幸家來) “행복한 가족이 미래다”	778	7,680
수원탁틴내일	“알아가는 성, 깨닫는 성”	1,000	8,980
(사)경기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행복한 그녀 수원여성” 소식지 발간	300	6,400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육아 품앗이 “가족모두 두런두런”	673	5,940
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	여성소비자 상담사 양성 교육	840	7,620
치매미술치료협회	시니어 건강 미술요법사 양성과정	1,000	8,500
한국다문화교육 상담센터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과정	924	9,240

수원기독호스피스회	가장 아름다운 섬김, 여성호스피스 전문 교육 사업	4,100	9,600
(사)한자녀더갓기운동 연합수원시지부	인구교육 및 달인 아빠를 찾아라(아빠 육아능력 인증시험)	0	7,002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웰빙의류개발 및 리폼창업 교육과정(중급)	3,210	5,285

자료: 수원시, 2016b, 「2016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4) 2016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현황

수원시는 2016년에 총 21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지원하였다. 지원 사업비는 총 228,615천원이고, 실제 집행액은 201,800천원이다(<표 3-19> 참조). 이전 연도에 비해 사업비 지원 금액과 실제 집행액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1개 단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표 3-19> 2016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비 지원금액		실집행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	228,615	21	201,800

자료: 수원시, 2017b, 「2017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2016년 양성평등기금 사업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수원탁틴내일에서 실시한 “두드림 바로알자 성폭력” 으로 지원액이 19,740천원(자부담 2,480천원)인 반면, 지원액이 가장 적은 사업은 (사)경기다문화사랑연합 수원지회 수원다문화센터에서 실시한 “다문화 가정 행복만들기 학부모 교육” 으로 지원액이 4,070천원(자부담 539천원)이다.

<표 3-20> 2016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계	
		자부담	지원액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을 찾는 navigation '참Navi'	2,055	15,950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가정에서 난 평등하고 싶다	387	17,000
치매미술치료협회	건강미술지도사 양성과정	1,400	12,400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행복지수UP! 양성평등 아카데미	950	7,930
수원다시서기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여성노숙인 자존감회복 프로그램	450	9,355
서호노인복지관	은퇴한 남편들의 가사분담 및 자립을 위한 쿠킹클래스 '요리날다'	560	8,430
(사)다문화가족 지원연합회	양성평등 조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사업 포기	8,450
수원 YWCA	성인지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Human Plus	1,965	7,900
한국다문화교육 상담센터	다행복 프로젝트 ON!	800	7,060
(사)공예문화협회	체험하는 진로탐색을 통한 양성평등교육	3,720	14,520
수원시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여성노동 “지속의조건 다시 평등을 말한다”	700	7,000
(사)수원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떠나는 역사 문화 기행	6,010	11,000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빠 놀아줘~	2,210	11,800
수원여성회	강사단 양성을 통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1,562	6,270
수원탁틴내일	두드림 바로알자 “성폭력”	2,480	19,740
(사)한자녀 더갓기 운동연합 수원시지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명절음식 콘테스트	3,056	10,660
(사)수원여성 노동자회	여성,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 프로그램	810	5,920
늘품상담 사회적협동조합	지구마을 가족이야기	910	6,580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자녀양육 역할 재분배를 통한 균형있는 가족만들기	1,650	5,680
(사)수원여성의전화	수원시민을 위한 올래길	1,500	14,900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	미혼모부자 양성평등 지원 사업 “행복지킴이”	1,600	16,000
(사)경기다문화사랑연합 수원지회 수원다문화센터	다문화가정 행복만들기 학부모교육	539	4,070

자료: 수원시, 2017b, 「2017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5) 2017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현황

2017년도의 경우 29개 사업을 지원하며, 기금 신청액 기준 지원금액은 359,655천원이다 (<표 3-21> 참조).

<표 3-21>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비 지원금액			
건수	기금 신청액	자부담	기타
29	359,655	53,522	5,860

자료: 수원시, 2017, 「2017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별 사업비 현황은 <표 3-22>와 같다. 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사업은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에서 실시하는 “별별패밀리 극장” 으로 지원액이 20,000천원(자부담 2,000천원)인 반면, 지원액이 가장 적은 사업은 수원다시서기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여성수다의 날” 로 지원액이 6,403천원(자부담 500천원)이다.

<표 3-22> 2017년 양성평등기금 사업별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계	
		자부담	지원액
(사)경기다문화사랑연합 수원지회 수원다문화센터	다문화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	730	6,558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수원시 양성평등축제	2,000	12,000
(사)공예문화협회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진로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4,680	18,720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기협회 수원시지회	장애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가 양성	600	8,150
(사)수원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떠나는 역사문화 기행	6,800	16,040
(사)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프로그램	1,000	8,940
(사)한자녀더갓기 운동연합 수원시지부	인구 교육, 달인 아빠를 찾아라	3,262	9,370

(사)행복한 가정문화원 수원지부	특별한 아빠와 함께하는 양성평등 확산 인형극	2,300	18,084
가족사랑교육원	양성평등을 위한 도형심리와 자연친화 체험지도	1,200	10,540
경기뇌교육협회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교육'	1,100	9,900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	지구마을 가족이야기	4,110	15,890
다림꽃문화원	나도 꽃 공예가	1,036	10,238
서호노인복지관	은퇴한 남편들의 가사분담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쿠킹클래스 '요리날다'	740	8,260
소통문화교육협회	일가양득 「나는 아빠다」	920	7,559
수원YWCA	활동을 통한 성인지 스토리	1,200	10,000
수원기독교호스피스회	가정+일, 고민 ZERO를 지원하는 호스피스 전문 봉사자 교육사업	2,550	10,800
수원다시서기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여성수다의 날	500	6,403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모두 다함께 양성평등	-	12,145
수원여성근로자복지센터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일터 만들기	940	12,280
수원여성의 전화	성평등을 위한 제3자 캠퍼스 프로젝트 -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1,204	19,908
수원여성회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나답게 살아가기”	2,120	17,680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함께 걷어가는 행복동행학교	1,300	11,000
수원탁틴내일	두드림 바로알자 “성폭력”	2,480	19,950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을 찾는 Navigation '참 Navi'	2,790	15,950
영통종합사회복지관	토요자녀 돌봄 프로젝트 '부자유친'	1,860	7,290
자연주의교육연구소	텃밭과 함께하는 청소년 예비 부모교육	1,500	12,000
치매미술치료협회	인지개발지도사 양성과정	1,400	12,000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1,200	12,000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	별별패밀리 극장	2,000	20,000

자료: 수원시, 2017, 「2017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제3절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현황

1. 평가의 의의 및 평가주체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영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수원시는 매년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원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는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의 목적은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차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환류함으로써 기금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된다.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실·국장과 여성단체대표,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이 포함되며,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수원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34조). 2017년 현재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 기금 결산,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해 심의한다(동조례 제33조).

2. 평가내용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운영평가는 공모사업 선정평가와 사업결과 평가로 구분된다.

1) 선정평가 내용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다. 2016년 이전까지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는 평가영역(4개) - 평가지표(10개) 등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평가영역은 ① 적합성, ② 효과성, ③ 사업추진능력, ④ 사업실현가능성 등으로 구성하고,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평가영역별로는 상이한 배점(가중치)을 부여하고 있지만 평가지표에는 동일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표 3-23> 2014-2015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 심사기준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적합성(30)	목적성(10)	10	7	5	3	0
	필요성(10)	10	7	5	3	0
	참신성(10)	10	7	5	3	0
효과성(30)	유용도(10)	10	7	5	3	0
	참여도(10)	10	7	5	3	0
	기여도(10)	10	7	5	3	0
사업추진능력(30)	금액적정성(10)	10	7	5	3	0
	자부담(10)	10	7	5	3	0
	최근1년간 사업실적(10)	10	7	5	3	0
사업실현가능성(10)	사업 실현가능성(10)	10	7	5	3	0
계 (100점)		소 계				

자료: 수원시, 2014b, 「2014년도 제1회 수원시성평등위원회 검토자료」.
수원시, 2015b, 「2015년도 제1회 수원시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이후 2016년부터는 평가영역(4개) - 평가지표(9개) - 세부 평가지표(17개) 등으로 평가체계가 세분화되었다. 평가영역은 ① 사업계획, ② 사업집행, ③ 사업예산, ④ 사업성과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표 3-24> 참조).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 영역(30점)은 내용 적합성(20점)과 사업참신성(10점) 등 2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내용 적합성은 ‘기금사업의 목적이 양성평등 실현에 적합한 사업인가?’, ‘성인지 관점에 입각하여 사업이 계획되었는가?’ 등 2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측정된다. 사업참신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이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행해지는 사업인가?’, ‘소외된 영역의 사업으로 개척성·발굴성이 있는가?’ 등 2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활용된다.

사업집행 영역(30점)은 프로그램 충실성(10점), 단체의 전문성(10점), 사업수행 능력(10점) 등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충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충실하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가?’

를 활용한다. 단체의 전문성은 ‘단체의 전문성(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계획하였는가?’,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조직, 인력, 네트워크, 시설, 강사진 확보 등)은 충분인가?’ 등 2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측정된다. 사업수행 능력은 최근 1년간 양성평등(여성발전 관련사업)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올해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한다.

사업예산 영역(20점)은 예산편성 적정성(15점)과 자부담(5점) 등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예산편성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요구 금액의 적정 여부’, ‘사업비 규모, 기준단가, 편성배분의 적합성’ 등이 활용된다. 자부담은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과 자부담 능력 여부에 의해 측정한다.

사업성과 영역(20점)은 지역파급 효과(10점)와 사업의 효과성(10점) 등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지역파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로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수원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는가(홍보 및 양성평등 인식의 전환)?’ 등을 활용한다. 사업의 효과성의 구체적인 세부 평가지표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다문화가족의 성평등한 가족관계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양성평등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가?’ 등 5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활용된다.

이외에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평가에서 가산점 및 감점 지표를 포함시키고 있다. 감점 기준은 작년도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침 불이행, 자부담, 회계처리 등 부적정 지적사항 건수 등이 적용된다. 가점 기준은 ‘수원시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사업인가?’, ‘작년도 평가결과 A등급(90점 이상)단체 기관인가?’를 적용한다. 가산점 지표의 적용은 평가결과와 환류기능과 회계처리 등 사업운영상의 과정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3-24>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 심사기준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사업계획 (30점)	내용 적합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사업의 목적이 양성평등 실현에 적합한 사업인가 성인지 관점에 입각하여 사업이 계획되었는가 	20	16	12	10
	사업 참신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이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행해지는 사업인가 소외된 영역의 사업으로 개척성·발굴성이 있는가 	10	8	6	4
사업집행 (30점)	프로그램 충실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충실하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가 	10	8	6	4
	단체의 전문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의 전문성(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계획 하였는가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조직, 인력, 네트워크, 시설, 강사진 확보 등)은 충분한가 	10	8	6	4
	사업수행 능력(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간 양성평등(여성발전 관련사업)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올해 사업수행능력 판단 	10	8	6	4
사업예산 (2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요구 금액의 적정 여부 사업비 규모, 기준단가, 편성배분의 적합성 등 판단 	15	13	11	9
	자부담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과 자부담 능력 여부 ※ 자부담 10% 미만은 0점 자부담 10-15% 2점, 자부담 16-20% 3점 자부담 21-25% 4점, 자부담 26-30%이상 5점 	5	4	3	2
사업성과 (20점)	지역파급 효과(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수원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는가 (홍보 및 양성평등 인식의 전환) 	10	8	6	4
	사업의 효과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양성평등한 가족관계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다문화가족의 성평등한 가족관계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양성평등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8	6	4
계 (100점)		소 계				
가산점	감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년도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침 불이행, 자부담, 회계처리 등 부적정 지적사항 건수 1건(-1점), 2건(-2점), 3건(-3점) 순으로 감점 	- 계속사업 정산결과 반영 - 우선 중점 사업 반영			
	가점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사업인가 (10점) 작년도 평가결과 A등급(90점이상) 단체·기관 (10점) ※ 모두 해당되어도 최대 10점만 반영 				

자료: 수원시, 2017b, 「2017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2) 결과평가 내용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결과에 관한 평가체계는 평가영역(4개) - 평가지표(12개) - 세부 평가지표(13개)로 구성된다. 평가영역은 ① 사업의 적절성, ② 사업의 성과, ③ 사업과정 및 운영, ④ 사업의 파급효과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표 3-25> 참조).

사업의 적절성 영역(28점)은 사업의 필요성 및 차별성(12점), 사업목적과 기금간·적합성(8점), 사업목적과 내용 간 일관성(8점) 등의 평가지표로 측정된다. 사업의 필요성 및 차별성은 ‘기관의 사업이 지역사회 양성평등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가?’, ‘기관의 사업이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들과 비교할 때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 2개의 세부 평가지표에 의해 측정한다. 사업목적과 기금간·적합성의 세부 평가지표로는 ‘기관의 사업목적이 양성평등기금의 기금운용 용도와 일치하는가?’를 활용하고 있다. 사업목적과 내용간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관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목적과 목적을 위해 계획된 사업내용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담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사업의 성과 영역(32점)은 사업에 대한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모집 인원, 사업 결과 인원)(8점), 사업 참여자의 출석률(8점),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8점), 사업의 지속가능성(8점) 등 4개의 평가지표로 나누어진다. 사업에 대한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모집 인원, 사업 결과 인원)은 ‘기관의 사업에 대한 최초계획이 집행 결과 혹은 실적에서 달성되었는가(인원 등)?’로 측정된다. 사업 참여자의 출석률은 프로그램의 참여 출석률로 측정된다.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는 ‘참여자 만족도 등 자체 분석을 실시하였는가?’를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같은 사업으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감안)?’로 측정한다.

사업과정 및 운영 영역(24점)은 사업 참여자 선정의 적합성(6점), 참여자 모집 및 홍보방법(6점), 양성평등기금 집행의 적정성(12점) 등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사업 참여자 선정의 적합성(선정기준 등)은 ‘기관의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가?’를 통해 측정한다. 참여자 모집 및 홍보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모집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였는가?’를 활용한다. 양성평등기금 집행의 적정성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보조금카드 사용, 사업비 지출 등 집행의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한다.

사업의 파급효과 영역(16점)은 기금사업 이후 사업주체의 발전성(8점)과 기금사업을 통한 단체역량강화 및 전문성 개선(8점) 등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기금사업 이후 사업주체의 발전성은 ‘사업주체는 지역사회에 기관을 좀 더 인식시키고, 기관이 지향해야 할 사업을 발굴하였는가?’ 등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기금사업을 통한 단체역량강화

및 전문성 개선은 ‘기관은 기금지원 사업의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사업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함양하거나 혹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는가?’를 통해 측정된다.

<표 3-25>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정량적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사업의 적절성 (28점)	사업의 필요성 및 차별성(12)	기관의 사업이 지역사회 여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가?
		기관의 사업이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들과 비교할 때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목적과 기금간 적합성(8)	기관의 사업목적이 양성평등기금의 기금운용 용도와 일치하는가?
	사업목적과 내용간 일관성(8)	기관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목적과 목적을 위해 계획된 사업내용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담고 있는가?
사업의 성과 (32점)	사업에 대한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8)	기관의 사업에 대한 최초계획이 집행 결과 혹은 실적에서 달성되었는가?
	사업 참여자의 출석률(8)	기관의 사업목적 및 운영에 대한 사업성과는 어떠한가?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8)	참여자 만족도 등 자체 분석은 실시하였는가?
	사업의 지속가능성(8)	같은 사업으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업과정 및 운영 (24점)	사업 참여자 선정의 적합성(6)	기관의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가?
	참여자 모집 및 홍보 방법(6)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모집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였는가?
	양성평등기금 집행의 적정성(12)	사업을 수행하는데 보조금카드 사용, 사업비 지출 등 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16점)	기금사업 이후 사업주체의 발전성(8)	사업주체는 지역사회에 기관을 좀 더 인식시키고, 기관이 지향해야 할 사업을 발굴하였는가?
	기금사업을 통한 단체역량강화 및 전문성 개선(8)	기관은 기금지원 사업의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사업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함양하거나 혹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는가?

자료: 수원시, 2017b, 「2017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정량적 평가지표 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정성적 평가지표는 사업추진의 역량 및 사후관리 평가, 향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필요성 있는 사업 발굴, 평가사례 전파로 사업수행 단체간 정보 공유 및 역량강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원시의 결과단계의 평가지표는 정량적 평가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수원시, 2017b).

<표 3-26>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정성적 평가지표

평가지표
1. 귀 기관(단체)에서 수행하는 양성평등기금(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1. 당초사업목적과의 부합여부(적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의 경우 사유기재 ○ 사업 변경 시 승인여부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추진방법은 무엇입니까(구체적)
3. 사업목적에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합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3-1. 참여 목표 인원 (교육 수료인원)
3-2. 교육생의 만족도 (설문조사별도 실시)
3-3.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4.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취업연계, 알선 등)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사업 추진한 경우)
5. 기타
5-1. 양성평등기금(여성발전기금) 공모·지원 등에 관한 개선, 또는 보완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2. 양성평등기금(여성발전기금)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
5-3. 수원시에서 앞으로 양성평등(여성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 여성발전기금시 사용했던 평가지표로 여성발전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수정.
 자료: 수원시, 2016b, 「2016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3. 평가방법

1) 선정평가 방법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평가는 양성평등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차 검토하며 양성평등위원회가 최종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양성평등기금 사업 및 지원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사업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심의·의

결에서 제외한다(수원시, 2017b).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예산, 사업성과 등 4개 평가영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사업집행은 각각 30점, 사업예산과 사업성과는 각각 20점으로 구성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최종점수가 70점 미만(2016년까지는 60점 미만)인 경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한다.

2) 결과평가 방법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결과평가는 사업 정산서 검토·분석, 지도점검 등 현장평가 방식으로 실시된다. 현장평가는 기금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사업일정에 맞추어 방문 날짜를 파악하고, 사전에 평가지표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한다. 현장평가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여성정책팀장과 담당주무관으로 구성된 평가반의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량적 평가지표인 사업의 적절성, 사업의 성과, 사업과정 및 운영, 사업의 파급효과의 4개 평가영역과 정성적 평가지표를 통해 총점을 산출한다. 평가결과를 <표 3-27>과 같이 총 5개 등급(A, B+, B, C+, C)으로 최종 평가한다.

<표 3-27>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등급

구분	내용	점수
A 등급	평가지표가 지향하는 목표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사업을 실행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큼 우수한 사례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여함	90점 이상
B+등급	평가지표가 지향하는 목표에 상당히 부합되도록 성실하게 실행된 사업인 경우에 부여함	85점 ~ 89점
B 등급	평가지표가 지향하는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되기는 하나, 기대수준에 비추어볼 때 약간 미흡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에 부여함	80점 ~ 84점
C+등급	평가지표가 지향하는 목표에 약간 부합되기는 하나, 기대 수준에 비추어볼 때 미흡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에 부여함	75점 ~ 79점
C 등급	평가지표가 지향하는 목표에 크게 미흡하여 사업내용 및 성과가 현저히 개선되지 않는 한 기금지원이 타당하지 않은 사업에 부여함	74점 이하

자료: 수원시, 2017b, 「2017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4. 평가결과의 활용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차년도 기금 지원 사업 계획수립에 반영

됨으로서 평가결과의 환류가 이루어진다. 양성평등기금 평가결과 활용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다(〈표 3-28〉 참조). 2013년도에는 ‘A등급’을 받은 단체·기관은 차년도 지원 사업 선정시 심의액의 1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C등급’을 받은 단체·기관은 차년도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페널티를 부여하였다(수원시, 2014).

2014년에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양성평등기금 평가결과 최우수 단체의 경우 차년도 지원 사업 선정시 심의액의 1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평가점수결과 미흡인 ‘C+등급’을 받은 단체는 심의액의 20% 이내에서 삭감하였으며, ‘C등급’을 받은 단체는 차년도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페널티를 부여하였다(수원시, 2015).

2015년에는 양성평등기금 평가결과 최우수단체에는 차년도 사업 선정시 가점(10점)을 부여하였으며, 회계처리 등 부적정 단체의 경우 차년도 사업 선정시 감점(-1점)하였다(수원시, 2016b).

2016년은 2015년과 유사하지만 미세하게 수정·보완하였다. 지원 사업 평가결과 ‘A등급(90점 이상)’ 단체·기관에 대해 차년도 사업 선정시 이를 반영하였다. 사업 선정 평가시 ‘A’ 등급을 받은 기관 및 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가산점 10점을 부여한다. 반면 회계처리 등 부적정 지적사항 건수로 1건(-1점), 2건(-2점), 3건(-3점) 순으로 감점 처리하였다(수원시, 2017b, p. 62). 2015년과 비교해 볼 때 가산점 기준 및 내용에 있어서 최우수단체를 A등급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감점 처리 기준을 세분화하여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28〉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결과의 활용

구분	인센티브	페널티
2013년	평가결과 우수사업(90점 이상) 심의액의 15% 이내 증액	평가점수결과 저조시(74점 이하) 미신청
2014년	평가결과 최우수단체 심의액의 15% 이내 증액	평가점수결과 미흡(75점~79점)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20% 이내 삭감 평가점수결과 저조시(74점 이하) 미지원
2015년	평가결과 최우수단체 차년도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10점)	회계처리 등 부적정 차년도 사업 선정시 감점 부여(-1점)
2016년	평가결과 A등급(90점이상) 단체·기관 차년도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10점)	작년도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침 불이행, 자부담, 회계처리 등 부적정 지적사항 건수가 1건(-1점), 2건(-2점), 3건(-3점) 순으로 감점

자료: 수원시, 2014-2017,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변경전: 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4년 동안(2013-2016)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결과는 〈표 3-29〉와 같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6년의 경우 B+등급은 4.8%에 비해 A등급이 전체 사업의 76.0%로 나타나 10개 기관·단체 중 7개 이상이 최우수 기관·단체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다음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기관 및 단체 입장에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유인기제(incentive mechanism)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표 3-29〉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등급 현황

등급	2013		2014		2015		2016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A(90점 이상)	2	6.9	7	20.6	1	4.4	16	76.0
B+(85-89점)	12	41.4	6	17.6	8	34.8	1	4.8
B(80-84점)	13	44.9	9	26.5	11	47.8	2	9.6
C+(75-79점)	1	3.4	7	20.6	3	13.1	2	9.6
C(74점 이하)	1	3.4	5	14.7	0	0	0	0
계	29	100	34	100	23	100	21	100

자료: 수원시, 2014-2017,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변경전: 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제4절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의 문제점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된다. 특히 2011년도부터는 전입금 없이 이자수입을 통해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매년 이자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원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당 지원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한계점이 발견된다. 현행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의 문제점을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가주체의 전문성 확보 문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주체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 및 결과평가 모두에서 발견된다. 현황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평가는 양성평등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최근 몇몇 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업선정 평가단 또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선정 평가시 1차적으로는 평가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 선정 평가단’ (가칭)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2차적으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1차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 평가주체의 전문성은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그리고 타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금 사업결과 평가는 수원시 여성정책팀장과 담당 주무관 등 2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는 기금 사업평가가 내부평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과평가를 포함한 사업평가지 내부평가의 한계로 인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업 평가주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2. 평가내용의 타당성 문제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내용에 관한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평가지표의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핵심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부재 및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평가내용 구성시 ‘평가영역 및 지표가 사업의 핵심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가’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표체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평가지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이 결여된 평가지표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성과 영역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지표’의 경우 사업의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표는 선정평가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둘째, 사업평가지 활용되는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관한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실질적 양성평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금 사업평가는 사업의 단기적 성과보다는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가지표들은 대부분 산출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 사업을 통한 궁극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성과 영역의 ‘사업에 대한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모집 인원, 사업 결과 인원)’ 과 ‘사업 참여자의 출석률’ 등은 전형적인 산출지표라 할 수 있다. 평가지표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행 산출지표를 결과지표로 평가지표를 확대·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추진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누락되어 있다. 현행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선정 및 결과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성과관리 측면에서 기한성은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국무조정실, 2006). 따라서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선정 및 결과 평가시 사업과정 및 운영측면에서 사업추진 일정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예산 집행 관련 평가지표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행 양성평등기금 사업 결과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예산과 관련된 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결과평가 중 예산 집행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 집행 결과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 기금사업운영평가의 경우 기금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가점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현재 이자수입으로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을 초과하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 절감 및 예산 집행 결과와 관련된 지표를 포함시켜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3. 평가방법의 적절성 문제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방법에 관한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평가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평가는 선정평가와 사업 결과평가만 시행되고 있으며, 중간평가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의 성평등기금 사업과 부산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중간평가는 과정평가의 일환으로 기존의 정책 및 사업의 집행절차와 설계를 개선하거나 조정·보완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 자체를 개선하여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이윤식, 2014). 이에 수

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이 본래 의도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절차나 설계 등을 수정·보완하여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방법이 절대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황분석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2016년 양성평등기금 사업 결과평가에서 A등급이 76%로 나타나 평가결과가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날 경우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 선정평가지 가산점 지표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지원 사업 결과평가지 관대화 평가경향을 방지하고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대평가 체계를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지표별 평가등급의 설정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평가등급의 설정은 평가수행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과 주관적 평가를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선정 및 결과평가에서는 평가지표별 평가등급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점부여 방식이 실제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평가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지표별 평가등급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4. 평가결과 활용상의 문제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 결과 활용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평가결과의 소극적 활용에서 나타나는 한계이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향후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별 성과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되어 성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의 공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결과 활용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수원시는 결과평가를 차년도 사업 선정평가지 활용하고 있다. 2014년도까지는 결과평가의 결과(평가결과 점수)를 차년도 사업 선정평가지 패널티를 적용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작년도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침 불이행, 자부담, 회계처리 등 부적정 지적사항 건수’ 일 경우에만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집행의 적정성만을 기준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사업평가의 종합결과를 차년도 선정평가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사업 평가모형 개발

제1절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절차 및 기본틀

1. AHP의 개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기법이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문제 상황의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을 그림이나 표로 조직화 하고 논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직관, 감정 그리고 경험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의사결정기법이다(Saaty, 1980; 최형선 외, 2012). AHP의 가장 큰 장점은 막연하고 복잡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데 있다. 1970년대 초반, Saaty에 의해 개발된 AHP 방법론은 의사결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복잡한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평가기준을 계층화 하여 계층에 따른 중요도를 결정해 갈 수 있다.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판단을 통해 평가자의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혹은 비합리적인 판단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포괄적인 문제의 틀을 제공한다.

AHP 모형은 다양한 의사결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론 적용의 간편성, 단순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막연하고 복잡한 문제를 점진적 단계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 요소로 분화하여 단순한 쌍대비교에 의한 판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해결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계량화하기 어려운 질적, 무형의 의사결정 변수를 비울척도로써 측정이 가능하게 한다. 한편 이러한 기법이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공리(Axiom)에 의하여 의사결정모델 적용을 위한 이론적 배경이 마련된다(Harker & Vagas, 1987).

첫째, 쌍대비교의 결과는 역수관계(reciprocal comparison)가 성립되어야 한다. 쌍대비교는 동일한 기준(criteria) 하에 두 개의 요소를 상호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중요성의 강도는 반드시 역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즉, A가 B보다 X배 중요하다면, B는 A보다 1/X배 중요시되어야 한다.

둘째, 비교척도의 동질성(Homogenesis)을 갖도록 한다. 비교되는 두 요소는 비교 가능할 때 유효하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척도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만약 계층 내에 나열된 문제들이 서로 이질적인 것이라면 정해진 척도만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셋째,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는 요인 또는 지표들은 독립성(Independent)을 갖추어야

한다. 포함된 요인이나 기준의 속성들은 상호 간의 유사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세부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는 중복된 정보를 갖게 되어 최종 도출된 중요도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게 된다.

넷째, 기대성(Expectation)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계층구조에 완전하게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자 자신이 고려하는 모든 대안 및 평가기준들이 계층구조의 최하위층에서부터 최상위층까지 모두 반영되어야 하고, 과거의 경험 및 지식을 토대로 대안 간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3~4단계의 계층구조로 형성되고, 보다 복잡한 문제일 경우에는 더 많은 단계의 복잡한 계층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공리사항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의사결정 결과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제점으로는 계층을 구성하는 요인 혹은 기준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나치게 많은 쌍대비교를 행하게 되는 경우 비교판단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와 쌍대비교에 사용되는 척도의 제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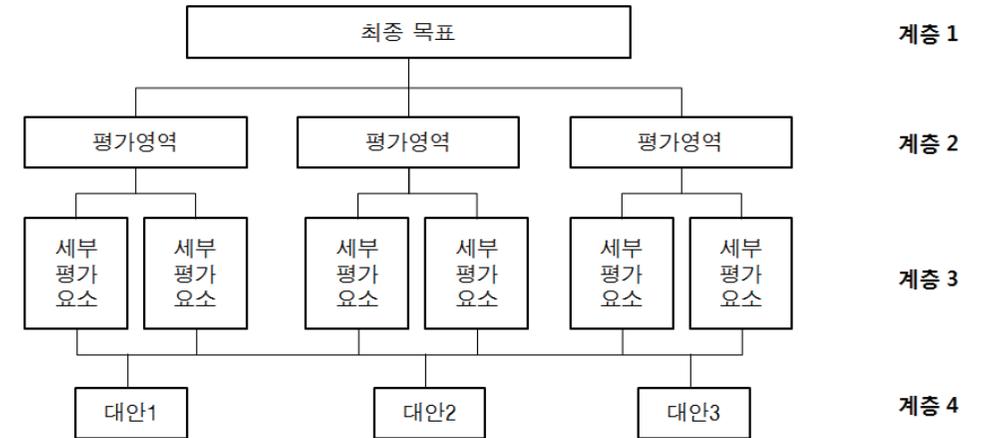
2. AHP의 절차

AHP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계층구조를 문제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둘째는 우선순위(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러한 주관적 판단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AHP 적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AHP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절차를 거친다(Satty, 1980).

1) 의사결정문제의 계층화

첫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문제의 계층화(Hierarchy of Decision Problem)이다. 이는 주어진 의사결정의 문제를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요소들로 계층화하여 문제를 분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계층의 최상층에는 의사결정의 목적이 포함되고, 그 다음의 계층에서는 의사결정 목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하위 속성들로 구성되어 진다. 이들 속성들은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일수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같은 계층 내의 요소들은 서로 상호 비교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선택의 대상

이 되는 여러 의사결정 대안들로 구성될 수 있다. Saaty(1980)는 한 계층에 포함되는 속성들의 수가 많아지면 쌍대비교의 횟수가 불필요하게 많아질 수 있음을 지적했고, 가능한 한 계층내의 평가기준들의 수가 9개를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하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보다 많은 속성의 수를 가질 경우, 통계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계층별 중요요인을 선별할 수 있다.



<그림 4-1> AHP의 표준 계층 구성

2)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of Decision Elements)를 통해 AHP 행렬을 구하는 단계에서는 평가기준들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선호정도를 일정한 척도에 의하여 계량화 하는 과정으로 상위계층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헌하는 직계 하위계층에 있는 요소들을 쌍대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한다. AHP에서는 Saaty가 제안한 9점 척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Saaty, 1982; Vegas, 1990).⁵⁾ 이는 Miller(1956)에 의해 제시된 심리학위 경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람은 7개 이상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는 내용에 근거한다.

5) 쌍대비교 시 중요도의 척도는 다음과 같다. ①동등함(어떤 기준에 대하여 두 활동이 비슷한 공헌도를 가진다고 판단), ③약간중요(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약간 선호됨), ⑤중요(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확실히 선호됨), ⑦매우중요(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강하게 선호됨), ⑨절대중요(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극히 선호됨), ②, ④, ⑥, ⑧은 위 값들의 중간값을 의미한다(조근태 외, 2003).

3) 가중치의 추정

세 번째 단계는 쌍대비교를 행한 후 얻은 행렬을 이용하여 각 계층에 대해서 비교대상 평가기준들이 갖는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Estimation of Relative Weight)하는 과정이다. 가중치의 추정은 고유벡터(eigenvector)를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한다. 또한 AHP 모형 설계 시 전문가 응답의 일관성 비율(CR)을 진단할 수 있는데, 일관성이 완벽할 경우 CR값은 0이 되고, 반대로 판단의 일관성이 좋지 않으면 CR값은 0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 특히 CR 지수가 너무 크면 판단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판단으로부터 도출되는 가중치를 분석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CR값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판단의 일관성을 인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재평가를 계속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Satty, 1982).

4) 가중치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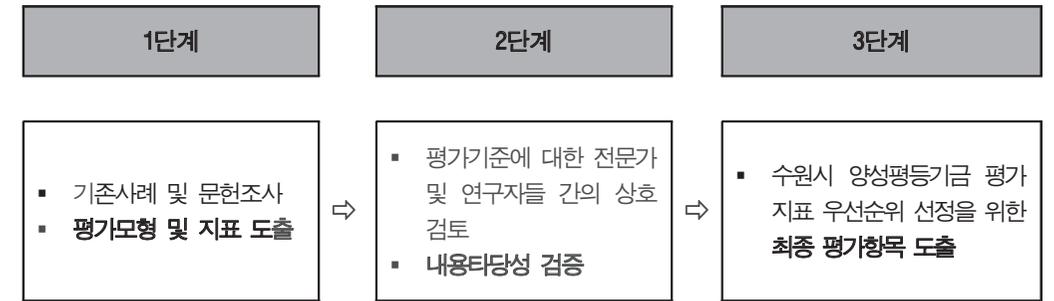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적대안을 얻기 위하여 각 계층에서 구해진 가중치를 종합(Aggregation of Relative Weights)하는 과정을 거친다. 서로 다른 대안의 종합적 우선순위(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층구조를 이루는 모든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 및 상대적인 선호도를 종합하여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단계이다(조근태 외, 2003).

제2절 평가모형 설계

1. 평가모형의 타당성 검토

본 연구는 양성평등기금 평가모형 설계와 평가지표 선정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세분화 된 단계를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그림 4-2〉 참조). 다양한 사례와 기준을 통해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를 도출하였고, 우선순위(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AHP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부의 사업운영평가 지표(기획재정부, 2016b)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금 사업운영 평가사례(경기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현행 수원시의 운영사례 등의 기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 사례는 유사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미비하고, 예산계획대비 집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양성평등기금 평가지표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으로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용타

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AHP 방법론을 통해 평가모형 내 지표들 간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정량적 평가지표 내에서 평가 비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AHP 방법론은 복잡한 수식이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평가영역 간의 균형을 맞추거나 혹은 한 가지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등의 통계적인 결정과 판단을 하는데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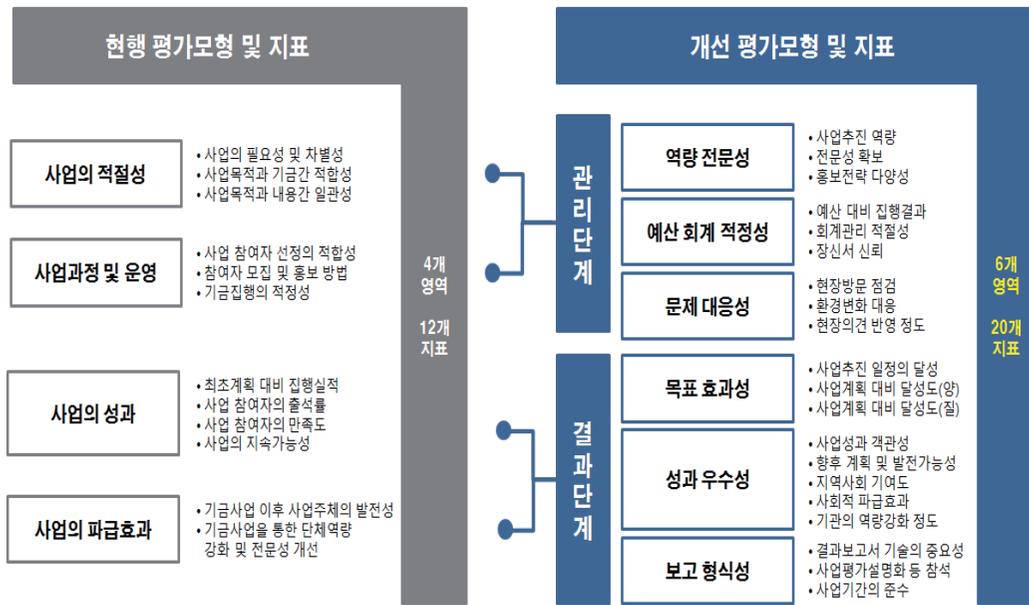


〈그림 4-2〉 AHP 평가기준의 도출과정

2.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집행에 대한 지표가 미비한 실정이고, 사업의 선정평가지표와 결과평가지표의 중복 및 모호성 때문에 기금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사업평가 방식의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결과평가 모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6개 평가영역과 20개 평가지표로 세분화하여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평가기준의 도출과 지표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3〉 참조).



<그림 4-3> 현행 평가모형 분석을 통한 개선모형 및 지표 도출

첫째,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추구하는 실질적 목표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4개 지표에 한정되어 있던 성과평가 영역을 목표의 효과성, 성과의 우수성, 보고의 형식성에 대한 3개의 측면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11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기금사업평가는 사업의 단기적 성과보다는 사업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와 제도의 확산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가지표들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기금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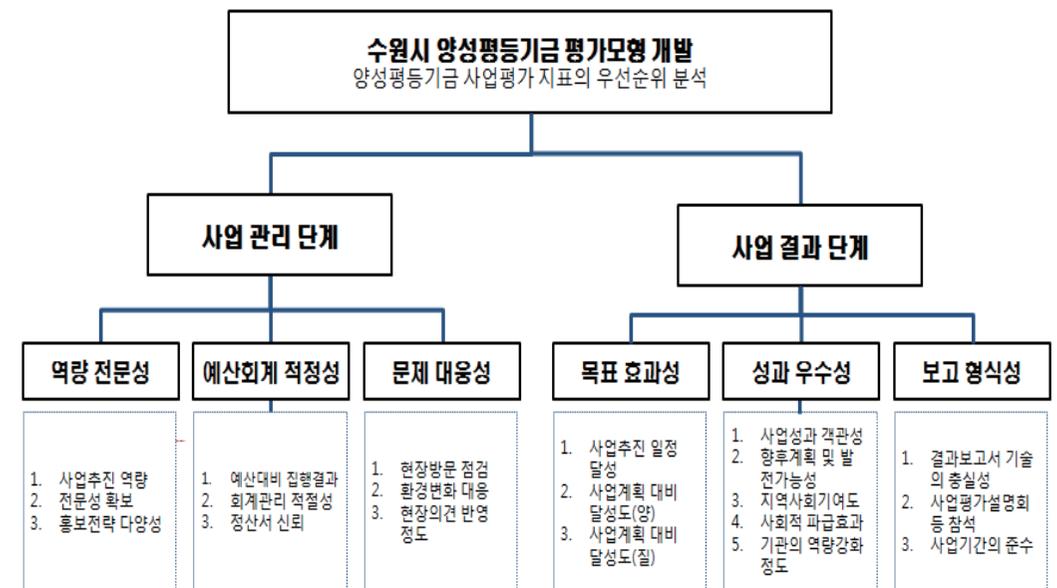
둘째, 예산과 회계의 투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였다. 현행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평가지표에서는 예산 집행 결과와 관련된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 하여 예산·회계 적정성을 평가영역 내에서 예산계획 대비 집행결과와 중도에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회계관리에 있어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의 준수여부,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금사업의 개별 운영주체들은 보다 투명한 회계관리와 예산절감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

6) 현행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성과 측정지표는 단순 산출지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에 대한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8점)’, ‘사업 참여자의 출석률(8점)’,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8점)’

이고, 이를 통해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재원마련의 유동성을 확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평가지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지표 도출과정과 최종 지표 선정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였다. 현행 평가지표 중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8점)’에 대한 것은 사업의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판단역시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의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 모형 지표에서는 측정지표의 도출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층모형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AHP 방법론을 통해 평가지표간의 우선순위(중요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평가모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구안된 평가모형은 <그림 4-4>와 같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관리단계와 결과단계로 평가대상을 구분하였고, 6개의 평가영역(역량 전문성, 예산회계 적정성, 문제 대응성, 목표 효과성, 성과 우수성, 보고서 형식성)과 20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⁷⁾ 이상의 각 계층별 기준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작적 정의는 <표 4-1>에 정리하였다.



<그림 4-4>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평가모형 설계

7) 현행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정량적 평가지표는 4개의 평가영역(사업의 적절성, 사업의 성과, 사업과정 및 운영, 사업의 파급효과)과 12개의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 양성평등기금 평가지표

평가 대상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지표 설명
관리 단계	역량 전문성	사업추진 역량	기관의 사업추진 관련 인력·재정 등 자원 투입 역량
		전문성 확보	외부 전문가 활용
		홍보전략 다양성	사업관련 홍보 활동 여부, 기금지원사업 표기 여부 등
	예산·회계 적정성	예산 대비 집행결과	예산계획 대비 집행결과, 예산실행 계획 변경 여부 등
		회계관리 적절성	사업비 집행 시 회계 규정 및 절차 준수
		정산서 신뢰	증빙서류 첨부 및 신뢰도
	문제 대응성	현장방문 점검	사업의 준비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현장방문 점검
		환경변화 대응	사업 전후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조치 등
		현장의견 반영 정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공유
결과 단계	목표 효과성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양)	성과지표 대비 목표 달성정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질)	전문가, 참여자 등의 의견 및 평가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객관성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허위 또는 과장여부 등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기관이 지향해야 할 사업에 대한 발굴 노력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 현실에 맞는 양성평등 사업 발굴 및 추진
		사회적 파급효과	여성의 권리향상, 양성평등기여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전문성 확보 등
	보고 형식성	결과보고서 기술의 중요성	사업추진 결과의 작성 충실도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	사업평가설명회 참석 여부
		사업기간의 준수	계획된 사업기간의 준수여부

3. 설문조사 및 데이터 수집

설문은 평가기준의 쌍대비교를 위해 Saaty(1980)의 9점 척도법으로 구성되었으며, 계층구조를 기초로 같은 상위 특성을 가진 요소 간의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7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약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AHP 방법론의 특성상 설문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2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응답결과 최종 18명이 회신을 완료하였으며, 응답률은 90.0%으로 나타났다.

<표 4-2>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순번	이름	구분	순번	이름	구분
1	최○○	한국부인회수원시지회장	11	신○○	치매미술치료협회
2	한○○	사단법인수원가족지원센터	12	박○○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3	최○○	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	13	김○○	사단법인수원여성노동자회
4	조○○	수원시여성근로복지센터	14	김○○	서호노인복지관
5	정○○	수원YWCA	15	김○○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6	정○○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	16	조○○	수원여성회
7	이○○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17	김○○	수원탁틴내일
8	이○○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18	김○○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9	이○○	고운들	총 18명 (응답률 90.0%)		
10	이○○	영통종합사회복지관			

4.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조사

본 연구에서 평가영역 및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설문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결과 값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모형의 각 단계별 평가영역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문항평균은 모두 3.50점을 넘기고 있어 대부분의 평가영역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기금사업 운영단체의 사업추진 역량과 전문성 등을 의미하는 역량전문성(4.41) 지표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목표 효과성(4.28), 성과 우수성(4.28), 예산·회계 적정성(4.12), 문제 대응성(3.82), 보고 형식성(3.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측정문항의 기술통계: 평가영역

측정개념		평균	표준편차	응답수
관리단계	역량 전문성	4.41	.507	18
	예산·회계 적정성	4.12	.697	
	문제 대응성	3.82	.636	
결과단계	목표 효과성	4.28	.461	
	성과 우수성	4.28	.575	
	보고 형식성	3.56	.511	

다음의 <표 4-4>는 양성평등기금 세부 평가영역에 대한 기술통계 값이다. 사업추진 역량(4.44)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추진 관련 인력 및 재정 등의 자원투입 역량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이어서 회계관리 적절성(4.33), 정산서 신뢰(4.28), 현장의견 반영 정도(4.22), 향후 계획 및 발전가능성(4.18)에 대한 세부지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3.67), 현장방문 점검(3.44),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3.44)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4> 측정문항의 기술통계: 평가지표

측정개념		평균	표준편차	응답수	
역량 전문성	사업추진 역량	4.44	.616	18	
	전문성 확보	4.17	.786		
	홍보전략 다양성	3.72	.548		
예산·회계 적정성	예산 대비 집행결과	4.00	.594		
	회계관리 적절성	4.33	.594		
	정산서 신뢰	4.28	.575		
문제 대응성	현장방문 점검	3.44	.705		
	환경변화 대응	3.94	.725		
	현장의견 반영 정도	4.22	.647		
목표 효과성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	3.67	.840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양)	3.78	.548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질)	4.17	.786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객관성	3.94	.827		17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4.18	.529		
	지역사회 기여도	4.17	.786		18
	사회적 파급효과	4.11	.583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3.89	.900		
보고 형식성	결과보고서 기술의 중요성	3.83	.707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	3.44	.705		
	사업기간의 준수	3.83	.924		

제3절 분석결과

주요 평가영역 및 세부평가지표의 가중치 계산은 Thomas Saaty(1987)의 고유벡터방법을 비롯하여 기하평균 방법을 사용하여 항목별 비효율성과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조사 및 설문방식은 종측과 횡측의 평가항목을 쌍대비교하여 종측의 평가항목이 횡측의 평가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따라 “1(동등)~3(약간중요)~5(중

요), 7(매우중요)~9(절대중요)”에 대한 척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층분석법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비율척도이다. 비율척도는 자연적인 원점이 존재하고, 두 수 사이의 간격의 크기가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비율척도를 사용하는 계층분석법의 계산결과는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와 자원 적정배분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되므로 적정 인력의 구성비율 설정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계층분석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평가지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HP 분석방법론 절차에 따라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일관성 비율(C.R)이 0.1 이상인 데이터는 제거하였다. 제거된 응답값을 제외하고 기하평균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⁸⁾

1. 양성평등기금 평가영역 중요도 분석결과

1) 관리단계 평가영역 중요도 분석결과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평가지표의 사업 관리단계에 해당하는 영역을 세 가지로 세분하였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어떠한 양성평등기금 평가모형 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평가영역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관리단계의 상대적 중요도는 문제 대응성(0.4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의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현장평가와 상황변화에 따른 즉각적이고 유연성 있는 변화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예산·회계 적정성(0.286)과 역량 전문성(0.17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표 4-5> 관리단계의 평가영역에 대한 중요도 분석

구분	가중치(중요도)	우선순위
역량 전문성	0.173	3
예산·회계 적정성	0.286	2
문제 대응성	0.449	1

8)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사결정이기 때문에 쌍대비교 데이터의 기하평균치를 집단의 쌍대비교치로 하는 기하평균법을 적용하였다. 기하평균법을 사용하면 집단의 쌍대비교 행렬의 대칭성분 또한 역수관계가 되어 개인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하평균을 실시하는 것은 평가자의 견해는 조작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2) 결과단계 평가영역 중요도 분석결과

본 연구는 기존의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성과지표가 내용타당성을 갖추지 못해 모호하거나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 및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목표 효과성, 성과 우수성, 보고 형식성의 세 가지로 세분화 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통한 중요도 분석결과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의 충실도, 계획된 사업기간의 준수 여부, 사업평가설명회 등의 참석에 대한 보고 형식성(0.428)의 평가지표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목표 효과성(0.294), 성과 우수성(0.16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표 4-6> 결과단계의 평가영역에 대한 중요도 분석

구분	가중치(중요도)	우선순위
목표 효과성	0.294	2
성과 우수성	0.166	3
보고 형식성	0.428	1

2. 양성평등기금 세부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결과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지표는 사업의 관리단계와 결과단계로 구분되어진다. 먼저, 관리단계에 해당하는 평가영역은 역량전문성, 예산·회계 적정성, 문제 대응성에 대한 것이고, 결과단계에 해당하는 평가영역은 목표 효과성, 성과 우수성, 보고 형식성이 있다. 관리단계와 결과단계에 해당하는 평가영역에 대한 중요도 분석은 앞서 실시하였으며(<표 4-4> 참조), 다음에서는 각 영역의 세부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역량 전문성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결과

역량 전문성 평가지표는 기관의 사업추진 관련 인력 및 재정의 자원 투입과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였는지, 사업관련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다음의 <표 4-7>과 같다. 우선순위 분석결과 설문 응답자들은 홍보전략 다양성(0.460)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사

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금지원사업 입을 표기하였는지를 평가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하여 지역 내에 양성평등 사업을 알리고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전문성 확보(0.254), 기관의 사업추진 역량(0.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역량 전문성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구분	가중치(중요도)	우선순위	
사업추진 역량	0.209	3	
전문성 확보	0.254	2	
홍보전략 다양성	0.460	1	

2) 예산·회계 적정성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결과

예산·회계 적정성 평가지표란 사업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결과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시업비 집행 시 회계 규정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준수하였는지, 정산서 관련 증빙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예산 대비 집행결과(0.398)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회계관리 적정성(0.256), 정산서 신뢰(0.253)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 3위 평가지표의 경우 중요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표 4-8> 예산·회계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구분	가중치(중요도)	우선순위	
예산 대비 집행결과	0.398	1	
회계관리 적정성	0.256	2	
정산서 신뢰	0.253	3	

3) 문제 대응성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결과

문제 대응성에 대한 평가지표는 사업의 준비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전후 상황의 변화에 따른 민첩한 대응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9>와 같으며, 전문가들은 현장방문 점검(0.433)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 환경변화 대응(0.339)과 현장의견 반영 정도(0.126)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9> 문제 대응성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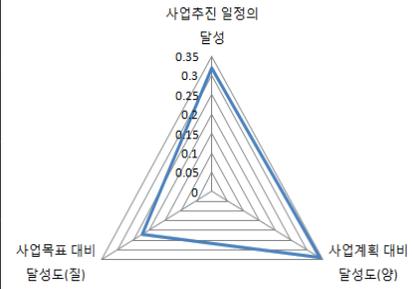
구분	가중치(중요도)	우선순위	
현장방문 점검	0.433	1	
환경변화 대응	0.339	2	
현장의견 반영 정도	0.126	3	

4) 목표 효과성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결과

목표 효과성 평가지표는 사업계획 대비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세부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결과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0.339)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가들은 기금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0.320) 지표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과지표 대비 양적 목표달성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0.220)는 기금사업에 있어서 전문가, 참여자 등의 의견 및 질적 평가에 대한 것이다(<표 4-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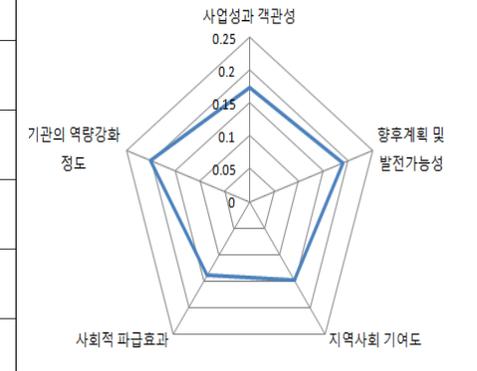
<표 4-10> 목표 효과성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구분	가중치(중요도)	우선순위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	0.320	2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양)	0.339	1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질)	0.220	3



<표 4-11>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구분	가중치(중요도)	우선순위
사업성과 객관성	0.174	3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0.190	2
지역사회 기여도	0.148	4
사회적 파급효과	0.140	5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0.202	1



5)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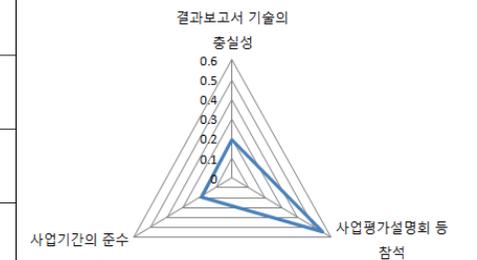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는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자체평가(허위 또는 과장여부), 사업의 향후 계획 및 발전가능성, 지역현실에 맞는 양성평등 사업의 발굴노력 및 여성의 실질적 권리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 조사를 통해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0.2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관련 단체 및 양성평등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문역량을 향상시켰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지표는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0.190)이다. 이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역 내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발굴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세 번째로는 사업성과 객관성(0.174)의 지표로서 사업성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기여도(0.148)와 사회적 파급효과(0.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평등 사업의 추진 및 정착을 통해 여성의 권리향상에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세부 지표별 가중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다음의 <표 4-11>에 제시하였다.

6) 보고 형식성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결과

보고 형식성에 대한 평가지표는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충실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과, 계획된 사업기간을 준수하여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세부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는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0.55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평가 설명회 등에 참석함으로써 지역 내 기금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결과보고서 기술의 충실성(0.192), 사업기간의 준수(0.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별 중요도 분석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보고 형식성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구분	가중치(중요도)	우선순위
결과보고서 기술의 충실성	0.192	2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	0.551	1
사업기간의 준수	0.189	3



3. 복합가중치 분석을 통한 종합적 우선순위 분석결과

다음에서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평가지표의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는 총 6개의 평가영역과 20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곱하여 복합가중치를 산출하였고, 다수의 평가지표 중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평가지표는 무엇인지, 어떤 지표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고 평가해야 하는 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관리단계에 대한 평가영역은 ‘역량 전문성’, ‘예산·회계 적정성’, ‘문제 대응성’에 대해 9개의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순위 분석결과 ‘문제 대응성’ 영역에 해당하는 ‘현장방문 점검(0.194)’ 지표와 ‘환경변화 대응(0.152)’이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이 얼마나 면밀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며 기금사업 운영주체로 하여금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산 대비 집행결과(0.114)’의 중요도는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전에 계획된 예산과 목표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근거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관리단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정해진 예산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관리단계에 해당하는 총 9개 지표에 대한 종합적 우선순위는 다음의 <표 4-13>에 제시하였다.

<표 4-13> 복합가중치 분석을 통한 종합적 우선순위: 관리단계

평가 대상	평가영역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표	상대적 중요도	복합 가중치	우선순위
관리 단계	역량 전문성	0.173	사업추진 역량	0.209	0.036	9
			전문성 확보	0.254	0.044	8
			홍보전략 다양성	0.460	0.080	4
	예산·회계 적정성	0.286	예산 대비 집행결과	0.398	0.114	3
			회계관리 적정성	0.256	0.073	5
			정산서 신뢰	0.253	0.072	6
	문제 대응성	0.449	현장방문 점검	0.433	0.194	1
			환경변화 대응	0.339	0.152	2
			현장의견 반영 정도	0.126	0.057	7

둘째, 사업 결과단계에 해당하는 평가영역별 지표의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4> 참조). 우선 ‘보고의 형식성’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0.236)’ 지표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금사업과 관련한 평가 설명회 등에 참석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이러한 노력은 양성평등 사업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기본자세이며 차후 년도 사업의 유지 및 지속을 위한 직·간접적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목표 효과성’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일정의 달성(0.094)’,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0.100)’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변경 없이 추진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자 성과지표 대비 목표의 양적 달성도에 대한 판단근거이다. 반면 ‘지역사회 기여도(0.023)’ 과 기금사업을 통한 양성평등문화의 확산과 같은 ‘사회적 파급효과(0.023)’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과단계에 대한 중요도 분석 종합결과 사업의 계량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중요도는 높게 나타났고,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같은 장기적인 추진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앞서 논의에서는 현행 사용 중인 지표에 대한 문제점으로 사업의 궁극적 목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하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사업의 양적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했다.

<표 4-14> 복합가중치 분석을 통한 종합적 우선순위: 결과단계

평가 대상	평가영역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표	상대적 중요도	복합 가중치	우선순위
결과 단계	목표 효과성	0.294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	0.320	0.094	3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양)	0.339	0.100	2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질)	0.220	0.065	6
	성과 우수성	0.166	사업성과 객관성	0.174	0.029	9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0.190	0.032	8
			지역사회 기여도	0.148	0.025	10
			사회적 파급효과	0.140	0.023	11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0.202	0.034	7
	보고 형식성	0.428	결과보고서 기술의 충실성	0.192	0.082	4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	0.551	0.236	1
			사업기간의 준수	0.189	0.081	5

4. 최종 평가지표 개발 및 제안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평가지표는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변환점수를 이용하여 개발 및 가중치(배점)을 부여하였다.⁹⁾ 종합점수는 100점으로 하였고, 평가영역별(관리단계, 결과단계), 세부지표별 배점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4-15>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최종 평가지표 및 가중치

평가 대상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설명
관리 단계 (50)	역량 전문성 (10)	사업추진 역량	2	기관의 사업추진 관련 인력·재정 등 자원 투입 역량
		전문성 확보	3	외부 전문가 활용
		홍보전략 다양성	5	사업관련 홍보 활동 여부, 기금지원사업 표기 여부 등
	예산·회계 적정성 (15)	예산 대비 집행결과	7	예산계획 대비 집행결과, 예산실행 계획 변경 여부 등
		회계관리 적절성	4	사업비 집행 시 회계 규정 및 절차 준수
		정산서 신뢰	4	증빙서류 첨부 및 신뢰도
	문제 대응성 (25)	현장방문 점검	12	사업의 준비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현장방문 점검
		환경변화 대응	9	사업 전후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조치 등
		현장의견 반영 정도	4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공유
결과 단계 (50)	목표 효과성 (16)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	6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양)	6	성과지표 대비 목표 달성정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질)	4	전문가, 참여자 등의 의견 및 평가
	성과 우수성 (10)	사업성과 객관성	2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허위 또는 과장여부 등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2	기관이 지향해야 할 사업에 대한 발굴 노력
		지역사회 기여도	2	지역 현실에 맞는 양성평등 사업 발굴 및 추진
사회적 파급효과		2	여성의 권리향상, 양성평등기여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보고 형식성 (24)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2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전문성 확보 등	
	결과보고서 기술의 중요성	5	사업추진 결과의 작성 충실도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	14	사업평가설명회 참석 여부	
	사업기간의 준수	5	계획된 사업기간의 준수여부	
총 점			100	

9) 최종 평가지표의 변화점수는 ‘평가영역별 상대적 중요도x세부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 를 계산하여 구하였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주요발견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평가모형의 지표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수원시가 성불평등구조에 따른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향후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평가지표 개발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 한 선정기준의 중요도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업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결과평가 모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는 지표의 내용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업결과 및 성과측정 지표의 선정 및 구체화,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6개 평가영역과 20개 평가지표(기존 4개 영역, 11개 평가지표)로 세분화하여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둘째, 세부영역 및 지표별 중요도를 토대로 복합 가중치를 계산한 결과 관리단계 영역에서는 ‘현장방문 점검(0.19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과단계에서는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0.236)’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금사업의 운영 주체는 양성평등 사업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평가설명회 등에 참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사업 전·후 상황에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같은 사업의 궁극적인 추진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결과단계 내의 하위지표인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지표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였으나,¹⁰⁾ AHP분석을 통한 복합가중치 결과에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과의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마련은 시급하나 여성의 권리향상과 지역현

10) 본 연구에서는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필요성 인식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4.18)’, ‘지역사회 기여도(4.17)’, 사회적 파급효과(4.11) ‘으로 측정되었으며, 모두’ 4점(필요하다)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실에 맞는 양성평등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표현하고 측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중요도는 낮게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행 경기도나 수원시의 기금평가지표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궁극적 목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운영되는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여성의 권리신장과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절 평가지표 개발의 활용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의 제도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양성평등기금사업 평가모형의 개발과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제도화의 시작이다. 수원시의 양성평등기금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형과 지표의 개발 이후에 실질적인 활용계획과 제도화의 노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지표는 사업의 관리과정과 성과에 대한 내용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발전된 평가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금사업 운영주체에서의 실질적 의견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결과평가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즉, 실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의견들을 수렴하여,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확산에 기반 한 실효성 있는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가 채택되어 활용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불이행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혹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선정하여 지원한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체계화된 단계를 통해 개발된 표준화된 평가모형은 향후 양성평등기금 사업운영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현재 동일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거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평가영역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타당성 갖추어 표준화된 지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평가모형 및 지표의 확산을 통해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운용 평가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 내 현실에 맞는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의 확산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모형과 지표를 선정하고 계층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려되지 못한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를 위해 향후에는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모형 및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보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운영되고 있는 평가지표 사례를 기반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였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의 과정을 거쳐 내용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향후에는 이들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평가모형 및 지표개발을 위한 사전평가 등을 실시하여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의 우선순위(중요도)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추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이상적(ideal type) 평가지표가 아니며, 지표의 중요도나 선정기준에 대해 추가 혹은 삭제되어야 할 항목이 있을 수 있다.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학술논문

- 박충훈(2007),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자체진단모형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1(2), 33-56
- 성향숙(2016),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운용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354-364
- 여영현(2007), 자치단체 기금의 효율화를 위한 운용성과와 특성 연구, 한국행정연구, 16(4), 167-188
- 이삼주(2009), 기금의 특성에 따른 지방기금의 실태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0(4), 87-104
- 이용환(2004), 지방기금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 2004 지방재정혁신 성과와 향후 과제, 지방재정, 2004(6), 27-41
- 허명순(2012), 지방기금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9-40

보고서

- 기획재정부(2016a), 2016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2016b),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1) [사업운영부문], 기획재정부
- 박재규 외(3명)(2009),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9
- 안태윤 외(1명)(2015),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사업 운영효율화 방안, 수원: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윤수재 외(1명)(2010), 기금운용평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조기현(1997),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미영 외(1명)(2016),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단행본

- 국무조정실(2006),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 국무조정실
- 국회예산정책처(2017), 대한민국재정 2017,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2012),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15),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12~2014 회계연도 평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17a), 2017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17b),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김현수 외(2명)(2015), 정부기금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적절성 분석: 연기금의 목표수익률 산정과 자산배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처
 나중식(2008), 재무행정론, 서울: 형설
 윤영진(2014), (새)재무행정학 2.0, 서울: 대영문화사
 이윤식(2014), 정책평가론, 서울: 대영문화사
 조근태 · 조용곤 · 강현수(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동현출판사.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한국은행 국고증권실(2009), 기금업무편람,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행정자치부(2003),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기본지침, 행정자치부

법령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수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양성평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기타

감사원(2003), 기금 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
 경기도(2016), 2017년도 경기도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
 부산광역시(2015a), 2015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중간평가 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15b), 2015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중간평가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16), 사업(단체별) 평가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17), 2017년도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부산광역시
 수원시(2014a),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원시
 수원시(2014b), 2014년도 제1회 수원시성평등위원회 검토자료, 수원시
 수원시(2015a),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원시
 수원시(2015b), 2015년도 제1회 수원시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수원시
 수원시(2015c), 2016년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수원시
 수원시(2016a), 2017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계획 공고, 수원시
 수원시(2016b), 2016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수원시
 수원시(2016c),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원시
 수원시(2017a),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원시
 수원시(2017b). 2017년도 제1회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자료, 수원시
 여성가족부(2015), 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이영안(2015), 수원시 여성발전기금 현황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2f017),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교육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영문자료>

Harker, R. P & Vargas, L. G. (1987). The Theory of Ratio Scale Estimation: Saaty's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33: 1383-1403.
 OECD. (2014).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ublishing.
 Salamon, Lester M. (2002). *The Tools of Government: Introduction*. Oxford Press.
 Saa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Inc.
 Saaty. T. L. (1982).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 New Approach to Deal with Fuzziness*

in Architecture. *Architect Science Review*, 23: 64-99.

Shick, Allen. (1986). Controlling Nonconventional Expenditures: Tax Expenditures and Loans.

Public Budgeting & Finance. Vol.6.

Vargas, L. G. (1990). An Overview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its Applications.

European Journal Operational Research. 48(1): 2-8.

| 부 록 |

설문ID			
------	--	--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주관기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진 및 문의처	이영안 연구위원 (031-220-8025)

양성평등기금 평가지표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문가 계층분석(AHP)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평가모형의 개발 및 발전방안을 위한 전문가 평가 설문지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7. 08

수원시정연구원

성 명	소속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설문작성방법

- 설문문항표 각 행의 양끝에는 평가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전문가 관점에서 평가항목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해당하는 숫자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 예시, 아래 표에서 *미세먼지 결감을 위한 대안* 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개인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 중요도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유세 인상*의 중요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9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도가 '동등'하다고 생각되시면 1에 표시하십시오.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경유세 인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화력발전소 점진적 폐지

양성평등기금 평가지표의 우선순위 의사결정 모형구조

※ 설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아래 도식과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대상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지표 설명
관리 단계	역량 전문성	1. 사업추진 역량 2. 전문성 확보 3. 홍보전략 다양성	기관의 사업추진 관련 인력·재정 등 자원 투입 역량 외부 전문가 활용 사업관련 홍보 활동 여부, 기금지원사업 표기 여부 등
	예산·회계 적절성	1. 예산 대비 집행결과 2. 회계관리 적절성 3. 정산서 신뢰	예산계획 대비 집행결과, 예산실행 계획 변경 여부 등 사업비 집행 시 회계 규정 및 절차 준수 중빙서류 첨부 및 신뢰도
	문제 대응성	1. 현장방문 점검 2. 환경변화 대응 3. 현장의견 반영 정도	사업의 준비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현장방문 점검 사업 전후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조치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공유
결과 단계	목표 효과성	1.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 2.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양) 3.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성과지표 대비 목표 달성정도 전문가, 참여자 등의 의견 및 평가
	성과 우수성	1. 사업성과 객관성 2.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3. 지역사회 기여도 4. 사회적 파급효과 5.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허위 또는 과장여부 등 기관이 지향해야 할 사업에 대한 발굴 노력 지역 현실에 맞는 양성평등 사업 발굴 및 추진 여성의 권리향상, 양성평등기여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전문성 확보 등
	보고 형식성	1. 결과보고서 기술의 중요성 2.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 3. 사업기간의 준수	사업추진 결과의 작성 충실도 사업평가설명회 참석 여부 계획된 사업기간의 준수여부

1.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모형의 평가영역의 중요도 결정

1.1. 관리단계 '평가영역'에 대한 설명

평가대상 단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구성
관리 단계	역량 전문성	1. 사업추진 역량 +인력, 재정 등 자원투입 역량 2. 전문성 확보 +외부 전문가 활용 3. 홍보전략 다양성
	예산·회계 적절성	1. 예산 대비 집행결과 2. 회계관리의 적절성 +회계규정 및 절차준수 3. 정산서 신뢰 +중빙서류 신뢰도, 첨부정도 등
	문제 대응성	1. 현장방문 점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 2. 환경변화 대응 +사업전후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조치 등 3. 현장의견 반영 정도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견공유

1.2. 관리단계의 3가지 평가영역(역량 전문성, 예산·회계 적절성, 문제 대응성) 간 상대적 중요도

※ 평가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평가지표를 토대로 각 평가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보통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역량 전문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예산·회계 적절성
역량 전문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문제 대응성
예산·회계 적절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문제 대응성

1.3. 관리단계의 3가지 평가영역(역량 전문성, 예산·회계 적절성, 문제 대응성)에 대한 필요성 평가

※ 평가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평가지표를 토대로 각 평가영역의 필요성(5점 척도)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평가대상 단계	평가영역	필요성 정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관리 단계	역량 전문성	1	2	3	4	5
	예산·회계 적절성	1	2	3	4	5
	문제 대응성	1	2	3	4	5

1.4. 결과단계 '평가영역'에 대한 설명

평가대상 단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구성
결과 단계	목표 효과성	1.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 2.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양) +성과지표 대비 목표 달성 정도 3.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질) +전문가, 참여자 등의 의견 및 평가
	성과 우수성	1. 사업성과 객관성 +사업결과 자체평가, 허위 또는 과장여부 2.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추후 사업에 대한 발굴노력 3.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 현실에 맞는 양성평등 사업 발굴 및 추진 4. 사회적 파급효과 +양성평등기여 5.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관련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
	보고 형식성	1. 결과보고서 기술의 중요성 +사업추진 결과의 작성 충실도 2.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 3. 사업기간의 준수 +계획된 사업기간 준수여부

1.5. 결과단계의 3가지 평가영역(역량 전문성, 예산·회계 적절성, 문제 대응성) 간 상대적 중요도

※ 평가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평가지표를 토대로 각 평가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목표 효과성	9	8	7	6	5	4	3	성과 우수성
목표 효과성	9	8	7	6	5	4	3	보고 형식성
성과 우수성	9	8	7	6	5	4	3	보고 형식성

1.6. 결과단계의 3가지 평가영역(역량 전문성, 예산·회계 적절성, 문제 대응성)에 대한 필요성 평가

※ 평가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평가지표를 토대로 각 평가영역의 필요성(5점 척도)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평가대상 단계	평가영역	필요성 정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결과 단계	목표 효과성	1	2	3	4	5
	성과 우수성	1	2	3	4	5
	보고 형식성	1	2	3	4	5

2.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모형의 평가영역 내 세부지표의 중요도 결정

1. 관리단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지표 중 「관리단계」에 해당하는 평가영역은 △역량 전문성 △예산·회계 적절성 △문제 대응성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지표별 중요도와 필요성을 판단하기위한 문항이오니, 잘 읽고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21~2.10]

21. '역량 전문성' 평가영역의 세부지표에 대한 설명

평가영역	평가지표 구성	평가지표 설명
역량 전문성	1. 사업추진 역량	기관의 사업추진 관련 인력·재정 등 자원 투입 역량
	2. 전문성 확보	외부 전문가 활용
	3. 홍보전략 다양성	사업관련 홍보 활동 여부, 기금지원사업 표기 여부 등

22. '역량 전문성' 평가영역 구성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 세부평가지표의 내용과 평가영역 구성을 토대로 각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1. 사업추진 역량	9	8	7	6	5	4	3	2. 전문성 확보
1. 사업추진 역량	9	8	7	6	5	4	3	3. 홍보전략 다양성
2. 전문성 확보	9	8	7	6	5	4	3	3. 홍보전략 다양성

23. '역량 전문성'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필요성 평가

※ 평가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평가지표를 토대로 각 평가영역의 필요성(5점 척도)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평가영역	평가지표	필요성 정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역량 전문성	1. 사업추진 역량	1	2	3	4	5
	2. 전문성 확보	1	2	3	4	5
	3. 홍보전략 다양성	1	2	3	4	5

24. '예산 회계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지표에 대한 설명

평가영역	평가지표 구성	평가지표 설명
예산회계 적정성	1. 예산 대비 집행결과	예산 계획 대비 집행결과, 예산 실행계획 변경 여부 등
	2. 회계관리 적절성	사업비 집행 시 회계 규정 및 절차 준수
	3. 정산서 신뢰	증빙서류 첨부 및 신뢰도

25. '예산 회계 적정성' 평가영역 구성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 세부평가지표의 내용과 평가영역 구성을 토대로 각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중립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1. 예산 대비 집행결과	9	8	7	6	5	4	3	2	1	2. 회계관리 적절성
1. 예산 대비 집행결과	9	8	7	6	5	4	3	2	1	3. 정산서 신뢰
2. 회계관리 적절성	9	8	7	6	5	4	3	2	1	3. 정산서 신뢰

26. '예산 회계 적정성'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필요성 평가

※ 평가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평가지표를 토대로 각 평가영역의 필요성(5점 척도)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평가영역	평가지표	필요성 정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예산회계 적정성	1. 예산 대비 집행결과	1	2	3	4	5
	2. 회계관리 적절성	1	2	3	4	5
	3. 정산서 신뢰	1	2	3	4	5

27. '문제 대응성' 평가영역의 세부지표에 대한 설명

평가영역	평가지표 구성	평가지표 설명
문제 대응성	1. 현장방문 점검	사업의 준비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현장방문 점검
	2. 환경변화 대응	사업 전후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조치 등
	3. 현장의견 반영 정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공유

28. '문제 대응성' 평가영역 구성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 세부평가지표의 내용과 평가영역 구성을 토대로 각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중립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1. 현장방문 점검	9	8	7	6	5	4	3	2	1	2. 환경변화 대응
1. 현장방문 점검	9	8	7	6	5	4	3	2	1	3. 현장의견 반영 정도
2. 환경변화 대응	9	8	7	6	5	4	3	2	1	3. 현장의견 반영 정도

29. '문제 대응성'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필요성 평가

※ 평가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평가지표를 토대로 각 평가영역의 필요성(5점 척도)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평가영역	평가지표	필요성 정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문제 대응성	1. 현장방문 점검	1	2	3	4	5
	2. 환경변화 대응	1	2	3	4	5
	3. 현장의견 반영 정도	1	2	3	4	5

II. 결과단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평가지표 중 「결과단계」에 해당하는 평가영역은 △**목표 효과성** △**성과 우수성** △**보고 명식성**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지표별 중요도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문항이오니, 잘 읽고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2.11~2.20]

2.10. '목표 효과성' 평가영역의 세부지표에 대한 설명

평가영역	평가지표 구성	평가지표 설명
목표 효과성	1.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 2.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양) 3.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성과지표 대비 목표 달성정도 전문가, 참여자 등의 의견 및 평가

2.11. '목표 효과성' 평가영역 구성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 세부평가지표의 내용과 평가영역 구성을 토대로 각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보통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1.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	9	8	7	6	5	4	3	2	1	2.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양)
1.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	9	8	7	6	5	4	3	2	1	3.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질)
2.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양)	9	8	7	6	5	4	3	2	1	3.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질)

2.12 '목표 효과성'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필요성 평가

※ 평가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평가지표를 토대로 각 평가영역의 필요성(5점 척도)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평가영역	평가지표	필요성 정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목표 효과성	1. 사업추진 일정의 달성	1	2	3	4	5
	2.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양)	1	2	3	4	5
	3.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질)	1	2	3	4	5

2.13. '성과 우수성' 평가영역의 세부지표에 대한 설명

평가영역	평가지표 구성	평가지표 설명
성과 우수성	1. 사업성과 객관성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허위 또는 과장어부 등
	2.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기관이 지향해야 할 사업에 대한 발굴 노력
	3.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 현실에 맞는 양성평등 사업 발굴 및 추진
	4. 사회적 파급효과	여성의 권리향상, 양성평등기여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5.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전문성 확보 등

2.14. '성과 우수성' 평가영역 구성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 세부평가지표의 내용과 평가영역 구성을 토대로 각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보통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1. 사업성과 객관성	9	8	7	6	5	4	3	2	1	2.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1. 사업성과 객관성	9	8	7	6	5	4	3	2	1	3. 지역사회 기여도
1. 사업성과 객관성	9	8	7	6	5	4	3	2	1	4. 사회적 파급효과
1. 사업성과 객관성	9	8	7	6	5	4	3	2	1	5.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2.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9	8	7	6	5	4	3	2	1	3. 지역사회 기여도
2.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9	8	7	6	5	4	3	2	1	4. 사회적 파급효과
2.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9	8	7	6	5	4	3	2	1	5.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3. 지역사회 기여도	9	8	7	6	5	4	3	2	1	4. 사회적 파급효과
3. 지역사회 기여도	9	8	7	6	5	4	3	2	1	5.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4. 사회적 파급효과	9	8	7	6	5	4	3	2	1	5.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2.15. '성과 우수성'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필요성 평가

※ 평가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평가지표를 토대로 각 평가영역의 필요성(5점 척도)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평가영역	평가지표	필요성 정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성과 우수성	1. 사업성과 객관성	1	2	3	4	5
	2. 향후계획 및 발전가능성	1	2	3	4	5
	3. 지역사회 기여도	1	2	3	4	5
	4. 사회적 파급효과	1	2	3	4	5
	5. 기관의 역량강화 정도	1	2	3	4	5

2.16. '보고 형식성' 평가영역의 세부지표에 대한 설명

평가영역	평가지표 구성	평가지표 설명
보고 형식성	1. 결과보고서 기술의 충실성	사업추진 결과의 작성 충실도
	2.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	사업평가설명회 참석 여부
	3. 사업기간의 준수	계획된 사업기간의 준수여부

2.17. '보고 형식성' 평가영역 구성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 세부평가지표의 내용과 평가영역 구성을 토대로 각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보통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결과보고서 기술의 충실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2.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
1. 결과보고서 기술의 충실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3. 사업기간의 준수
2.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3. 사업기간의 준수

2.18. '보고 형식성'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필요성 평가

※ 평가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평가지표를 토대로 각 평가영역의 필요성(5점 척도)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 V, ○ 등의 표시)

평가영역	평가지표	필요성 정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보고 형식성	1. 결과보고서 기술의 충실성	1	2	3	4	5
	2. 사업평가설명회 등 참석	1	2	3	4	5
	3. 사업기간의 준수	1	2	3	4	5

※ 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Evaluation Model for the Gender Equality Fund Project: Focused on the Suwon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valuation model necessary for designing the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practical gender equality through the continuation of the Suwon City Gender Equality Fund Project. Until now at Suwon City, the index to assess the key performances - practical gender equality system and spread of culture - has been absent and some have pointed out the problem with the content validity of the evaluation domains and the specific indices. Moreover, while the average fund of the Suwon City Gender Equality Project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budget is decreasing. Therefore, the need for the evaluation model for objective and fair result evaluation of the project and the selection of index have come to the fore and,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index of the evaluation model. Such an attempt can be helpful for Suwon City to design the strategy for resolving the discrimination issue based on the gender inequality structure and arrange the basis of the policy and the system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the future.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in order to organize the result evaluation model of the project, the model was established after segmentalizing into 6 evaluation domains and 20 evaluation indices(the existing domains and evaluation indices were 4 and 11 respectively). Based on the problem of the existing project evaluation method, the study strived to equip the content validity of the indices. Specifically, the evaluation index of the project was selected through a variety of cases and standards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as used to identify the priority (order of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index.

Second, the index which can measure the practical objectives and performances pursued

by the project was materialized and classified in detail. The existing performance evaluation indices were comprised of the calculation indices which can identify short-term and tangible outcomes but the revised model has been designed to specifically and effect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by segmentalizing into 'effectiveness of objective', 'excellence of performance', and 'formality of report' and comprising 11 specific indices which can measure such categories.

Third, this study came up with the index which can measure the transparency of budget and accounting. The current Suwon City Gender Equality Fund Evaluation Index do not include the evaluation index related to budget execution results. Thus, based on such a problem recognition, the index was designed to measure whether there are any changes in the budget and accounting trade off during budget execution and the middle process compared to the budget plan, whether the fix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in accounting management were complied, and whether reliability was secured by possessing evidential documen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s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gender equality fund project evaluation model can be the beginning of institutionalization. The evaluat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has the form of a standardized index since it possesses content validity after reflecting the opinion of experts. The standardized evaluation model can be applied in other local governments which are planning to adopt the gender equality fund project in the future and be applied at or become the benchmarking target at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operating the same system. In the short-term, the model can effectively and objectively conduct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the gender equality fund project and in the long-term, it can contribute in establishing the culture of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gender equality through the dispersion of various gender equality businesses which are suitable in the reality of respective regions.

Keywords: Gender Equality Fund, Fund Evaluation System,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 저자 약력 |

이영안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yslee@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여성 사회참여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여성 관련 기관 프로그램 조정을 위한 기초 연구」 (2016, 수원시정연구원)

이현승

행정학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과제연구원(현)

E-mail : grigrim7@suwon.re.kr

